

국가회계 재정통계

2020년 4분기

Vol. 25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국가회계 동향

- 제2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연차개선
- 제28차 및 제29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IPSASB 의견제출
-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 쟁점보고
-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4분기 정례회의 안건분석
- 『Government Accounting at a Glance: Central Government | Korea』 발간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정부 재무보고』 by WB
-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by OECD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0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 2020년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 2020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국가회계이론교육 동영상 서비스 실시

| 재정통계 동향

-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IMF 비금융자산 데이터 분석
- 2020년 K-IFRS 기준서 제·개정

| 공익법인회계 동향

-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오피니언

-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 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 센터동향

-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정보공시 개선 연구』 위탁과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제1차 및 제2차 『공공회계 포럼』 개최
- 제3차 『발생주의 재무정보 연구회』 개최
-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202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 『순채무 도입을 위한 금융자산 분류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제출

| 세미나

-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 『2020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 공지사항

- 뉴스레터 구독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정통계

2020년 4분기

Vol.25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01. 국가회계 동향	2
① 제2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연차개선	2
② 제28차 및 제29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IPSASB 의견제출	6
③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 쟁점보고	12
④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4분기 정례회의 안건분석	31
⑤ 『Government Accounting at a Glance: Central Government Korea』 발간	39
⑥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정부 재무보고』 by WB	40
⑦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by OECD	52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63
① 2020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63
②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64
③ 2020년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66
④ 2020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67
⑤ 국가회계이론교육 동영상 서비스 실시	68
03. 재정통계 동향	69
①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69
② IMF 비금융자산 데이터 분석	78
③ 2020년 K-IFRS 기준서 제·개정	96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98
①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98
05. 오피니언	101
①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안: 오류 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101
06. 센터동향	106
①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정보공시 개선 연구」 위탁과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106
② 제1차 및 제2차 「공공회계 포럼」 개최	109
③ 제3차 「발생주의 재무정보 연구회」 개최	112
④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114
⑤ 202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115
⑥ 「순채무 도입을 위한 금융자산 분류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제출	116
07. 세미나	117
①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117
② 「2020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129
08. 공지사항	138
① 뉴스레터 구독 안내	138
② 홈페이지 이용 안내	138

01 국가회계 동향

1 제2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연차개선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되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 개정(안)과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예규)」 등 일부 개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사항은 향후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친 후 공표되며,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및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및 논의 결과〉

구분	안건	논의 결과
의결안건 제1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양식의 명확성 제고 	원안대로 의결
의결안건 제2호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예규)」 등 일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보관금 분류유형(국고과-1737 공문)’에 따라 정부보관금 정의 및 분류 체계 개정 ‘퇴직수당미지급금’ 및 ‘퇴직수당비용’ 계정과목 신설 예산편성지침과 국가회계편람 간 설명 및 용어가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의 개정에 따라 국가회계예규 내 일부 재무제표 서식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 오류를 수정 타 법률의 개정사항을 국가회계예규에 반영 	원안대로 의결

구분	안건	논의 결과
보고안건 제1호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개요 및 추진 경과 •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내용 • 2019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원안대로 접수
보고안건 제2호 실무해설 개정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직접 보유로 회계처리 하되, 투자일임계약의 판단 기준 규정을 추가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10 보완(202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5의 임차개량자산 회계처리를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 적용 • 국가회계예규 개정에 따라 관련 실무해설, 적용 사례 등 수정 	원안대로 접수

이번 제2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은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 김완희 교수(가천대학교), 유승원 교수(경찰대학교), 윤재원 교수(홍익대학교), 이아영 교수(강원대학교), 임근구 전무(삼정회계법인), 정다미 교수(명지대학교), 정도진 교수(중앙대학교), 지현미 교수(계명대학교) 총 9명(가나다 순)이며, 민간위원 총 10명 중 9명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의결 및 접수되었다.

가.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양식의 명확성 제고

현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의 일부 재무제표 서식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개정하였다. 국가 재정운영표 양식의 부처명(대통령비서실) 예시를 삭제하고 일반적인 중앙관서 명칭 표기로 변경하였으며, 순자산변동표 양식을 전기 및 당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결산 수행 시 명확한 재무제표 서식을 제공하여 결산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나. '정부보관금 분류유형(국고과-1737 공문)'에 따라 정부보관금 정의 및 분류체계 개정

기획재정부 국고과는 정부보관금 관리를 강화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보관금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보관금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새로 개편하였다. 정부보관금은 '정부보관금 분류유형(국고과-1737 공문)'에 따라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보관금, 일시보유금 등 6개로 구분하고 디브레인(dBrain)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상 정부보관금 정의 및 분류체계를 개정하였다. '세입·세출외 현금'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보관금' 용어로 통일하였으며, 정부보관금이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보관금 제도개선 내역과의 차이를 해소하여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다. '퇴직수당미지급금' 및 '퇴직수당비용' 계정과목 신설

현재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퇴직수당미지급금' 및 '퇴직수당비용' 계정과목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계정과목 정의에 맞는 적절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결산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라. 예산편성지침과 국가회계편람 간 설명 및 용어가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

최초 국가회계기준의 계정과목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작성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나, 그 이후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 국가회계편람의 계정과목 중 예산편성지침과 설명 또는 용어가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편성지침과 국가회계편람의 계정과목 간 설명 및 용어가 일치하도록 총 85개 계정과목을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예산편성지침과의 불필요한 차이를 해소하고 예산과 결산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마. 타 법률의 개정사항을 국가회계예규에 반영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 및 「군인연금법」 전부 개정 등 관련 타 법령의 개정 사항 중 국가회계예규상 일부 정의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여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과 「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일부 수정하였다.

바.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직접 보유로 회계처리하되, 특정투자일임계약의 판단 기준 규정을 추가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10 보완

국가의 투자일임계약이 주로 비특정투자일임계약으로 이루어졌던 특성을 고려하여 2019회계연도부터 투자일임계약을 지분증권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실무해설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특정투자일임계약의 신규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특정투자일임계약의 직접 보유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존재하여, 특정투자일임계약을 직접 보유로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총 2회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와 관련 국가회계실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직접 보유로 회계처리하되, 특정투자일임계약과 비특정투자일임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를 마련하였다.

사.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5의 임차개량자산 회계처리를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 적용

2019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하고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해설을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한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결산조정분개로 임차개량자산의 인식 및 감가상각 등을 회계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산조정분개로 감가상각 등을 관리하는 경우 매년 다수의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세대 디브레인 개선 시 임차개량자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므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5의 임차개량자산 회계처리는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다.

2 제28차 및 제29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IPSASB 의견제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제28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와 제29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를 각각 10월 8일과 10월 23일에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이며,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8명 및 해외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회계자문위원회 위원 현황(2020년 12월 말 현재)〉

- ▲ 정부위원(1): 권기대(감사원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
- ▲ 민간위원(8): 김동수(삼일회계법인 이사), 김봉환(서울대학교 교수), 김진욱(건국대학교 교수), 박세환(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아영(강원대학교 교수), 주인기(연세대학교 교수), 최연식(경희대학교 교수), 허웅(이정회계법인 이사)
- ▲ 해외위원(3): Ian Ball(공공부문화계사협회 국제부문 회장), Andreas Bergmann(취리히대학교 교수), Delphine Moretti(OECD 공공예산정책국)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28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국가회계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가 올해 2월에 발표한 3종의 공개초안에 대한 소개와 쟁점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부대행사로 신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제29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에서는 센터가 작성한 IPSAS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서(안)를 둘러싼 심층 논의가 있었다.

3종의 IPSASB 공개초안은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ED 72, ‘이전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공개초안들은 수익거래와 이전비용(transfer expenses) 거래에 적용할 회계처리규정을 기존의 ‘교환거래 또는 비교환거래 여부’가 아닌 ‘수행의무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수익에 관한 현행 기준서들을 개편하고, 이전비용을 다루는 신규 기준서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	IPSASB 공개초안	개정 대상 현행 IPSAS
수익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	IPSAS 9, '교환거래수익' IPSAS 11, '건설계약'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	IPSAS 23, '비교환거래수익'
이전 비용	ED 72, '이전비용'(Transfer Expenses)	해당사항 없음 (신규 IPSAS)

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적용범위]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이하 'ED 70')과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이하 'ED 71')은 수익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원칙들을 다루는 기준서(안)이며, 수익거래가 수행의무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할 기준서(안)를 구분한다.

ED 70은 실체가 구매자와 체결한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익거래에 적용하는데, 여기서 수행의무는 실체가 구매자나 제3자 수혜자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구속력 있는 약정상의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ED 70을 적용할 수익거래는 반드시 구매자나 제3자 수혜자에 대한 실체의 재화·용역 이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ED 71은 ED 70의 적용 대상 이외의 거래, 즉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거래에 적용한다. 이러한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거래에는 수행의무는 없으나 현재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와 조세거래도 포함된다. 현재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실체(이전수령자)는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원을 적격지출 또는 지정활동에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거래와 달리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거래에서는 이전제공자나 제3자 수혜자에 대한 재화·용역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조세거래가 수행의무가 없는 거래에 포함되는 것은 조세법령에 따라 정부에는 권리가, 납세자에게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정부와 납세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약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ED 72, ‘이전비용’(이하 ‘ED 72’)은 비용의 여러 유형 중 이전비용의 인식과 측정 회계처리를 위한 기준서(안)이다. 이전비용은 거래상대방에게 자원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자산)를 수취하지 않는 비용거래를 말한다. ED 72에서 이전비용은 이전수령자에게 수행의무를 부담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수행의무가 있는 이전비용과 수행의무가 없는 이전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이전수령자의 수행의무는 재화·용역을 제3자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약속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ED 72를 적용할 이전비용 거래에서 실체(이전제공자)는 거래의 결과로 이전수령자에게서 자산(재화·용역)을 수취하지 않는다.

[주요 용어의 정의]

구속력 있는 약정(binding arrangement)은 약정의 당사자 모두에게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약정을 말하며, 계약(contract)은 구속력 있는 약정의 유형 중 하나이다. ED 70은 구속력 있는 약정의 집행 가능성이 법적 수단뿐 아니라 이와 동등한 수단으로도 확보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수단과 동등한 수단의 예로는 장관이나 정부부처가 정부의 지배를 받는 실체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도록 내린 지시, 미래 자금의 실질적인 삭감 등을 들 수 있다.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는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라 구매자나 제3자 수혜자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할 의무이다. **현재의무(present obligation)**는 실체가 회피 가능한 대안이 없거나 거의 없고 자원이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구속력 있는 의무로, 수행의무는 이러한 현재의무의 유형 중 하나이다. ED 70은 공공부문에서 3자간 약정이 일반적임을 고려하여 IFRS 15와 달리 구매자뿐 아니라 제3자 수혜자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하는 약속도 수행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전(transfer)은 다른 실체나 개인에게 대가(자산)를 받지 않고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조세 제외)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비교환거래는 재화·용역을 제공(수취)하고 수취(제공)한 대가가 거의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 거래를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거래인 이전과 차이가 있다.

[수익·이전비용의 인식 및 측정 기준]

ED 70은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을 실체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전 대상 재화·용역의 상대적 개별가격을 기준으로 각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D 71 적용 대상인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의 인식 원칙은 자원 유입과 관련된 현재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현재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현재의무를 이행한 때 혹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고, 현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자원의 유입 시점에 즉시 수익을 인식한다. 조세수익의 경우 과세대상사건이 일어난 때 인식한다.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은 현재의무가 있는 경우 현재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현재의무가 없는 경우 순자산의 증가 금액으로 측정하며, 조세수익은 자원 유입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전수령자에게 수행의무를 부과하는 이전비용은 이전수령자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인식하며, 해당 금액은 재화·용역의 상대적 개별구매가격 기준으로 각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대가로 측정한다. 그 외의 이전비용은 자원의 이전 시점과 이전제공자에게 현재의무가 발생된 시점 중 이른 날에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비용은 이전한 자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는데, 현재의무가 발생한 경우 부채 결제에 발생할 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한다.

나. 의견요청사항에 대한 센터 의견

IPS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21개의 의견요청사항(Specific Matters for Comment)을 요구하고 있다. 센터는 그 중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활동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11개의 의견요청사항에 대하여 국가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다음은 센터가 ED 70, ED 71, ED 72에 대해 IPSASB에 제출한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제출된 의견서의 원본과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서는 IPSASB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virtual-meeting-0>).

구분	의견요청사항(SMC)	비고
ED 70	(1) '구속력 있는 약정'의 정의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ED 70의 적용범위가 적정한가?	<p>[센터의견] 부분 동의 : 공개초안의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다음에 관한 문단 또는 적용지침의 보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판매자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가수취 권리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② 구속력 있는 약정과 계약의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③ 구속력 있는 약정의 유형에 법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p>[부대의견] : 기준서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구속력 있는 약정(binding arrangement)' 용어를 '약정(arrangement)'으로 줄이는 것을 고려할 것</p>
	(2) '이전수익'과 '수행의무가 있는 이전수익'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결정에 동의하는가?	<p>[센터의견] 부분 동의 : IPSASB의 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다음에 관한 적용사례 또는 결론도출근거의 보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전수익 해당 여부가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거래 회계처리와 무관함을 보여주는 적용사례 추가 ② ED 71의 적용 대상 거래가 이전거래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결론도출근거 추가
	(3)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의 요소와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의 요소가 모두 포함된 거래에 관한 적용지침에 동의하는가?	<p>[센터의견] 비동의 : 다음에 관한 적용지침 수정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ED 71의 문단 9와 ED 70 AG 69·70 사이의 순환구조 개선 ② 수행의무 요소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수행의무에 배분할 거래가격을 분리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
ED 71	(1) 지정활동 수행, 적격지출 발생에 대한 요구가 현재의무를 일으키는 것에 동의하는가?	<p>[센터의견] 부분 동의 : IPSASB 제안에 동의하나, 지정활동과 적격지출의 구분기준을 명시하는 적용사례 추가 필요</p> <p>[부대의견①] : 지정활동 수행 외에 적격지출 발생이 현재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문의</p>

구분	의견요청사항(SMC)	비고
		<p>[부대의견②] : 수행의무와 현재의무의 실무상 구분을 도울 수 있는 적용지침 또는 적용사례 추가 필요</p>
	(2)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ED 71에서 제공하는 흐름도가 명확하게 설명하는가?	<p>[센터의견] 비동의 : ED 71의 흐름도에 조세수익의 인식·측정 원칙을 다루기 위한 흐름 추가 필요</p> <p>[부대의견] : ED 72에 이전비용의 인식·측정 원칙을 다루는 흐름도 추가 권고</p>
	(3) 수행의무가 아닌 현재의무를 부담하는 수익 거래와 관련, 현재의무의 이행 여부 및 수익 인식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이 충분한가?	<p>[센터의견] 부분 동의 : 적격지출의 발생 여부가 현재의무의 이행 시점의 판단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침 수정 필요</p> <p>[부대의견] : 문단 54 내지 문단 57의 현재의무가 있는 수익의 인식 기준 관련 중복 문구 삭제 필요</p>
	(6) ED 71의 공시사항이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관련 정보 제공에 적절한가?	<p>[센터의견] 부분 동의 : 조세, 기타 강제성 기여금 및 부담금 관련 부과액 정보 추가 공시 필요</p>
ED 72	(3) 이전수령자의 수행의무 이행을 감독하지 않는다면 수행의무가 없는 이전비용으로 회계처리 되는 것에 동의하는가?	<p>[센터의견] 부분 동의 : 이전제공자 '감독'의 의미·범위에 대한 문단 또는 적용지침 보완 필요 : 실질적인 감독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행의무 이행 정보의 적시 보고 체제 구축이 필요한데, 이는 이전제공자의 중앙집권적 통제 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음</p>
	(4) 수행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의 인식 및 측정 규정에 동의하는가?	<p>[센터의견] 부분 동의 : 다음에 관한 공개초안 문단 등의 보완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론도출근거 및 적용사례에 구속력 있는 약정 체결 시 자산의 인식이 이전비용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유 설명 추가 ② 구속력 있는 약정 체결 시 자산의 인식을 다루는 문단 또는 적용지침 개발 필요

구분	의견요청사항(SMC)	비고
	(5) 수행의무가 있는 이전 비용의 인식 및 측정 관련 실무적 제약사항이 있는가?	[센터의견] 동의 : 공개초안 적용 시 다음의 애로사항이 예상됨 ① 이전비용의 전달 경로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거래주체 간 정보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수행의무 이행 정보의 적시 획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전산 인프라가 미비함

3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 쟁점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20년 국가회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무보고 개선」 과제를 진행하였다. 본 과제는 '재무제표'와 '주석 등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2020년에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간소화, 부속서류 위상 강화 등 재무제표 신설 등의 과제로 쟁점을 정리하고 장·단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쟁점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자문 TF를 구성하고 3개월간 운영을 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자문내용을 포함하여 2020년 말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020년에 진행한 재무보고 개선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재정상태표 간소화

1) 차감계정 공시 제외

현재 재정상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과목(Level III) 97개를 일괄 공시함에 따라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이 모두 표시되어 주요국 대비 공시과목이 과다하며, 이에 따른 이해가능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일반유형자산 11개, 사회기반시설 15개 등 차감계정이 전체 공시과목 중 41%(40개)를 차지하므로 간소화를 위해 차감계정을 일괄적으로 공시 제외하는 안을 제안함

〈주요 국가별 재정상태표 공시 계정과목 수〉

(단위: 개)

구 분	미 국	영 국	호 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 본	한 국
자 산	10	13	18	12	17	29	71
부 채	10	11	18	7	16	16	23
순자산	4	3	3	5	1	1	3
총 계정 수	24	27	39	24	34	46	97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찬성(6명)
 - 본문 정보의 제공 분량이 과다한 것은 정보 유용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른 주식정보가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함 것임
- 반대(2명)
 - 일괄 공시 제외보다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계정과목 개편

차감계정을 모두 공시 제외하는 경우에도 공시과목이 57개로 타 국가 대비 과다한 것을 개선사항으로 보고, 현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체계(회계과목(III)-관리과목(IV)-세부관리과목(V))를 개편하는 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①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신설(회계과목)
- ② 투자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
- ③ 일반유형자산의 회계과목을 현행 9개에서 4개로 간소화
- ④ 무형자산은 기타비유동자산의 하위(관리과목)로 구분
- ⑤ 장기차입부채상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관리과목) 신설
- ⑥ 사회보험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
- ⑦ 장기충당부채상 연금충당부채와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조정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① 610조원 규모 국민연금 운용자산 신설(찬성 6, 반대 2)
 - (찬성) 국민적 관심과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설하는 것에 동의
 - (반대) 재무제표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보다 주석에 부문별 정보로 공시하는 것이 적절
- ② 투자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통합(찬성 5, 반대 3)
 - (찬성)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공정가치 평가와 투자목적 유무 여부의 연결은 반대함
 - (반대) 민간에서도 금융상품과 금융자산의 혼동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부채와의 연계도 고려하여야 함
- ③ 일반유형자산의 회계과목을 현행 9개에서 4개로 간소화(찬성 8)
 - (찬성) 다만, 체계적인 주석 공시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④ 무형자산은 기타비유동자산의 하위(관리과목)로 구분(찬성 6, 반대 2)
 - (찬성) 각 중앙부처 수준에서 무형자산이 없는 부처가 상당수이며, 그 비중이 미미함
 - (반대)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기간 간 또는 실체 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유지
- ⑤ 장기차입부채상 국채 및 공채의 하위 계정과목(관리과목) 신설(찬성 6, 반대 1)
 - (반대) 자기국채 및 자기공채를 고려하였을 경우 간소화 취지에 반하며, 국고채권 비중에 비하여 외평채, 공채 등의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효과가 미비
- ⑥ 사회보험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상향(찬성 7)
- ⑦ 장기충당부채상 연금충당부채와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으로 조정(찬성 8)
 - (찬성) 다만,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계정과목으로서 일반적 대표성을 가지므로 하향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

3) 재무제표 작성단위 변경

현재 재정상태표를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는 원단위로 기재하고 있어 최대 16자리(예: 장기충당부채 1,000,184,767,286,150)로 표현됨에 따라 가독성이 저하되고 있음. 타 국가의 경우 백만(Million) 또는 10억(Billion) 단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의 일반적 표기방식(만, 억, 조) 또는 금액표기 기준(백만, 십억, 조) 단위로 조정하는 것을 쟁점으로 제시하였음

〈주요 국가별 재정상태표 공시 현황〉

구 분	미 국	영 국	호 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 본	한 국
총 계정 수	24개	27개	39개	24개	34개	46개	97개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8페이지
단위	10억\$	10억£	100만\$	100만\$	100만\$	100만円	1원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찬성(8명)
 - 실무자 및 정보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단위금액으로 조정
 - 해외 비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금액표기 방식(백만, 십억 등)이 바람직
 - 다만, 주석의 경우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할지, 큰 단위로 표시함에 따라 공시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석은 원단위를 유지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

나. 국가 재정운영표 간소화

1) 중앙관서 통합

국가 재정운영표는 부처별로 재정운영순원가를, 그 하위에 비교환수익을 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중앙관서의 규모, 조직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56개의 중앙관서를 기준 없이 나열¹⁾하고 있어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보았음. 2020년 현재 18개의 부처와 부처 하위의 17개의 청, 국무총리 하위의 5처와 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기관 등이 존재하므로 대통령, 국무총리 하위기관을 통합하고, 부처 하위 청은 모두 부처로 통합함으로써 국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

1) 2011회계연도 이후 신설 부처는 모두 하위에 위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관서 통합(안)〉

구분	하위 중앙관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등 5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슴기살균제 사건과 4·16세 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개 부처	하위 17개 청
별도 표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찬성(1명)
 - 통합정보는 조직별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단위별 정보보다 유용성이 높고 인지 과부하를 완화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조직성격상 행정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표시 기관 중 금액과 사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헌재, 선관위, 인권위)은 하단에 기타항목으로 통합하여 기재하고, 주석에 세부내용을 제공하는 방안 고려
- 반대(7명)
 - 부처 하위의 청을 통합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감사원·금융위원회 등을 통합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한 개선안이 아님
 - 조직체계상 하위기관인 경우에도 상위기관과의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를 수 있음
 - 현행을 유지하되 나열하는 순서는 원칙을 정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분야별 원가정보 제공

중앙관서 등 회계실체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원가로 정보가 제공되나, 국가 재정 운영표는 부처별로 재정운영순원가²⁾를 표시함에 따라 프로그램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예산 편성이 분야-부문-프로그램 체계로 이루어지고 각 회계실체와 중앙관서에서 프로그램 집계를 통해 사업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는 국가 재정운영표에는 누락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았음

2)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금액

16대 분야(세출예산 기준) 또는 12대 분야(예산 홍보자료 기준)로 프로그램 상위 인 분야별 원가를 제공한다면 관련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으며, 다음 3개의 안을 쟁점사항으로 제시함

- 1안: 현 재정운영표를 대체
- 2안: 추가적으로 재정운영표를 신설
-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주석으로 제공

〈16대 분야 및 12대 분야〉

16대 분야	12대 분야	비고
사회복지	보건·복지·고용	2개 분야를 1개로 통합
보건		
교통 및 물류	SOC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R&D / 기타	과학기술, 통신 분야 외 별도 집계(34개 부처)
통신		
일반·지방행정	일반·지방행정	1:1 대응
교육	교육	
국방	국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 및 안전	공공질서·안전	
환경	환경	
문화 및 관광	문화·체육·관광	
통일·외교	외교·통일	
예비비	-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1안: 현 재정운영표를 대체(3명)
 - (16대 분야) 세출예산과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16대 원가정보 제공 필요. 12대 분야는 예산 홍보자료 기준으로 자의적 해석과 인식이 가능하며, 향후 변경 가능성도 큼
 - (12대 분야) 예결산 관련 보도·홍보 자료에서 활용하는 그 취지를 반영하고, 다른 분야와 이질적인 예비비를 고려하였을 때 12대 분야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2안: 추가적으로 재정운영표를 신설(2명)
 - 재정운영표의 핵심은 국가 기능에 따른 정보 제공에 있음(예비비 제외 15대 분야)
- 3안: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주석으로 제공(3명)
 - 현 재정운영표가 제공하는 정보도 유용하고, 비교가능한 재정운영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대체하기는 어려움

다.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간소화

1) 프로그램원가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프로그램단위로 총원가, 수익 및 순원가를 공시하고 있으며, 하나의 중앙관서는 평균 9.1개의 프로그램을 공시하고 있음.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공시하는 중앙관서는 16개이며 최대 39개의 프로그램을 공시하는 중앙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존재함. 현재 양식은 한 페이지에 25줄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일부 부처의 경우 프로그램원가 부분만 1페이지를 초과하여 가독성이 저하되며, 공시되는 프로그램명이 해당 중앙관서의 업무 성격을 직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³⁾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았음. 또한 환경부의 경우 유사한 프로그램명이 부문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음

3) 경제정책, 정책조정, 경제협력, 재정운용, 재정관리, 재정기획: 부문으로는 모두 재정·금융에 해당

〈환경부 중복 프로그램명 현황〉

(단위: 억원)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FY2019	FY2018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2	64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	7
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대기환경 보전	17,456	8,097
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기후변화대응	799	-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0.4	29
농림수산	농업·농촌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	12
교통및물류	물류 등 기타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	18

개선안으로 직관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문별 원가를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원가를 부문원가로 개편
- 2안: '부'단위 중앙관서만 부문원가 공시⁴⁾
- 3안: 프로그램 개수(예: 10개 이상)를 기준으로 부문원가 공시

4) '부' 단위 중앙관서는 평균 20.1개의 프로그램, 4.9개의 부문, 2.4개의 분야를 가짐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1안: 모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원가를 부문원가로 개편(2명)
 - 중앙관서별 프로그램 수가 많아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국가 재무제표의 활용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
 - 원칙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및 결산 실무의 효율성 관점에서 1안을 지지
 - 다만, 부문수가 1~2개로 적은 중앙관서의 정보량이 저하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업무 성격, 역할 등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문의 개념 및 분류를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
- 2안: '부'단위 중앙관서만 부문원가 공시(없음)
- 3안: 프로그램 개수(예: 10개 이상)를 기준으로 부문원가 공시(1명)
 - 획일성보다는 목적적합한 프로그램원가가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유지(5명)
 - 프로그램은 기본적 분석 단위이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며, 주석을 통해 원가 활용을 위한 단위사업 정보 제공이 필요
 - 부문별 분류는 국가의 중기능에 따른 분류로 분류 폭이 너무 큼
 - 프로그램은 각 부처 예산 집행상황 및 모니터링의 기본 단위임

2)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하여 표시되고, 경비는 다시 성질별로 회계과목으로 공시함. 경비 하위 회계과목의 수가 대부분 20~23개로 공시되는데 세분화되어 있는 계정과목 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계정과목(소모품비, 인쇄비, 수도광열비 등)도 재정운영표 본문에 공시되고 있어 가독성이 저하되는 것은 문제로 보았음. 또한 필수보충정보에서 제공하는 성질별 재정운영표와도 중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으로 제시하고,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로만 구분하여 표시하고,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도 총액만 표시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음

〈관리운영비 개선안(기획재정부 예시)〉

현행	순원가	개선안	순원가
II. 관리운영비	219,303,647,145	II. 관리운영비	219,303,647,145
1. 인건비	94,550,169,523	1. 인건비	94,550,169,523
2. 경비	124,753,477,622	2. 경비	124,753,477,622
(1) 복리후생비	16,074,603,225		
(2) 소모품비	3,181,654,054		
(3) 인쇄비	1,420,112,220		
(4) 광고선전비	506,770,910		
(5) 지급수수료	43,758,883,609		
(6) 세금과공과	354,429,707		
(7) 수도광열비	4,943,203		
(8) 지급보험료	7,322,566		
(9) 피복비와급량비	159,200		
(10) 교육훈련비	446,059,372		
(11) 지급임차료	1,330,558,371		
(12) 유류비	54,070,174		
(13) 수선유지비	382,499,710		
(14) 여비교통비	3,359,307,460		
(15) 업무추진비	4,196,522,425		
(16) 외주용역비	39,191,886,446		
(17) 보전비	37,956,070		
(18) 출연비	2,089,000,000		
(19) 보조비	96,081,860		
(20) 감가상각비	5,612,505,480		
(21) 자산감액손실	458,553,827		
(22) 연구개발비	2,153,837,450		
(23) 기타비용	35,760,283		

〈비배분비용·수익 개선안(기획재정부 예시)〉

기획재정부 현행	순원가	개선안	순원가
Ⅲ. 비배분비용	2,476,717,730,799	Ⅲ. 비배분비용	2,476,717,730,799
1. 지급수수료	483,897,540	Ⅳ. 비배분수익	4,318,380,972,736
2. 지급임차료	35,898,944		
3. 감가상각비	4,527,837		
4. 대손상각비	99,651,969,518		
5. 이자비용	633,317,777,498		
6. 평가손실	37,978,955,373		
7. 자산감액손실	17,755,325,542		
8. 자산처분손실	62,993,414,313		
9. 기타비용	1,624,495,964,234		
Ⅳ. 비배분수익	4,318,380,972,736		
1. 재화및용역 제공수익	167,317,621,928		
2. 이자수익	2,047,023,812,031		
3. 평가이익	36,210,132,760		
4. 자산처분이익	828,947,284,083		
5. 기타수익	1,238,882,121,934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찬성(8명)
 -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동의
 - '비교환수익 등'도 동일한 취지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개선안에 동의하나,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의 정의, 예시 및 정책적 의미에 대한 정보, 포괄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필요

라. 부속서류 위상 강화 및 다양한 정보 제공

1) 국세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국세징수활동을 수행하는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필수보충정보로 국세징수활동표를 공시하고 있으나, 국가통합 시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 등이 재정운영표로 통합되고 필수보충정보는 삭제함에 따라 국세징수정보가 국가통합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았음. 더불어 국세수익,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환입금액만 재정운영표에 한 줄로 공시함에 따라 2019회계연도 기준 비교환수익 353조원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수익 292조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세징수활동표를 재무제표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과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에 국세징수활동표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안을 제시함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에 국세징수활동표를 주석으로 제공(7명)
 - 국세수익이 일부 중앙관서에만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재무제표'보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시하는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
 - 국세수익 정보는 국가결산보고서의 'I. 결산총평'이나 'II. 세입·세출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가 재무제표를 기업 재무제표와 유사하게 가져가는 것이 정보이용자의 편의나 전문가 양성 측면에서 도움이 됨
 - 국세징수기관은 국세징수활동을 위탁받아 수행하나, 국세수익으로 징수된 현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를 자신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로 보아 주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2) 성질별 재정운영표 개선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재정운영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고 있으나, 성질별 정보 역시 사업별 정보 못지않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원가정보는 부처별로 제공하는 미국, 부처별 정보와 성질별 정보를 제공하는 뉴질랜드, 성질별 정보만 제공하는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국가별로 상이함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주석 공시하는 방안을 지지(6명)
 - 기본 재무제표의 형식이 기업 재무제표와 이질화되는 것을 최소화
 - 주재무제표의 종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가독성 저하를 가져옴
- 재정운영표의 구조는 정보이용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성질별, 기능별 등으로 구성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1명)

3) 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국가(중앙관서)에 포함되는 회계실체는 각각 그 성격에 따라 특성이 구분되나 합산 정보만 제공되고 있음. 특히 중앙관서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 회계실체에 따라 성격이 상당히 구분됨. 또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와 달리 각 기금을 제외한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는 공시되지 않아 이용 가능하지 않음.⁵⁾ 이에 따라 현 재무제표상 중앙관서별 원가를 제공하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공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신설을 제안함

5)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무제표는 구할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의 재무제표는 구할 수 없음

〈회계실체별 재정운영표(예시)〉

(단위: 조원)

구분	행정형회계		사업형회계		내부거래, 비교환수익 대체 등	국가통합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 특별회계	기금		
프로그램총원가	180.4	37.1	6.6	122.9	△8.2	338.8
프로그램수익	0.3	0.4	6.5	96.6	△1.6	102.2
프로그램순원가	180.1	36.7	0.1	26.3	△6.6	236.6
관리운영비	22.0	0.6	0.5	0.9	-	24.0
비배분비용	19.8	6.7	0.5	10.3	△9.2	28.1
비배분수익	10.3	8.4	0.3	40.7	△15.6	44.1
재정운영순원가	211.6	35.6	0.8	△3.2	△0.2	244.6
비교환수익 등	-	-	1.2	35.8	237.0	274.0
재정운영결과	211.6	35.6	△0.4	△39.0	△237.2	△29.4

〈회계실체별 재정상태표(예시)〉

(단위: 조원)

구분	행정형회계		사업형회계		내부거래 등	국가통합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 특별회계	기금		
자산	672.0	292.0	16.8	1,343.4	(567.4)	1,756.8
유동자산	44.3	8.9	5.6	315.0	(56.5)	317.3
투자자산	66.8	50.7	0.5	1,007.4	(509.5)	615.9
일반유형자산	466.4	24.2	9.3	14.7	-	514.6
사회기반시설	91.7	208.1	0.3	-	-	300.1
무형자산	0.9	0.1	0.0	0.1	-	1.1
기타비유동자산	1.9	0.0	1.1	6.2	(1.4)	7.8
부채	234.1	9.5	5.2	1,545.3	(581.4)	1,212.7
유동부채	43.8	4.7	3.7	144.2	(77.3)	119.1
장기차입부채	180.6	3.5	0.1	700.5	(502.8)	381.9
장기충당부채	1.9	0.1	0.1	680.2	-	682.3
기타비유동부채	7.8	1.2	1.3	20.4	(1.3)	29.4
순자산	437.9	282.5	11.6	(201.9)	14.0	544.1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찬성(3명)
 -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통해 회계실체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
 - 지자체와 동일하게 중앙관서도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찬성
- 반대(4명)
 - 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정책적 의미가 거의 없음
 - 회계실체별 결산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효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제공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중앙관서 수준의 실체별 재무정보는 각 중앙관서의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공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
 - 중앙관서장조차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시 시기상조로 판단됨
 - 별도로 제공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음(필요하다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마. 정보이용자 이해가능성 제고

1) 사회보험상대표 신설

사회보장성기금과 같이 회계실체의 역할과 목적이 다른 회계실체가 단순 합산된 국가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저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상대표 재무제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연금(보험)비용, 자산처분이익 등 사회보험실체의 재무정보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정을 재분류하고 국가재무제표에서는 사회보험상대표에 속하는 회계실체를 제외하여 단순 자산·부채 정보가 아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임

〈사회보험상태표 작성 예시(FY2019)〉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1. 유동자산	193,396,855	8,670,069	1,869,611	1,923,464	205,859,999
2. 투자자산	542,790,746	12,302,116	7,611,292	21,013,958	583,718,112
3. 일반유형자산	-	276,870	1,096,382	577,766	1,951,018
4. 무형자산	-	4,182	590	-	4,772
5. 기타비유동자산	587,754	196,247	1,899	6	785,906
자산 계	736,775,355	21,449,484	10,579,774	23,515,194	792,319,807
1. 유동부채	84,409	18,126	93	144,599	247,227
2. 장기차입부채	-	705,497	-	-	705,497
3. 장기충당부채	-	-	19,422	547	19,969
4. 기타비유동부채	37,102	21,333	18,697,873	5,064,289	23,820,597
부채 계	121,511	744,956	18,717,388	5,209,435	24,793,290
순자산 계	736,653,844	20,704,528	△8,137,614	18,305,759	775,664,131
1. 당기 비용	51,285,271	4,401,152	17,430,734	6,813,738	79,930,895
(1) 연금(보험)비용	47,800,056	3,630,623	14,375,133	6,144,740	71,950,552
(2) 보조비	-	-	2,208,600	82,923	2,291,523
(3) 자산처분손실	1,763,592	547,006	4,252	14	2,314,864
(4) 파생상품	422,722	16,512	-	-	439,234
(5) 외환차손 등	452,946	102,420	-	-	555,366
(6) 기타	845,955	104,591	842,749	586,061	2,379,356
2. 당기 수익	67,277,108	5,236,100	12,091,220	8,100,659	92,705,087
(1) 연금(보험)수익	47,800,056	4,011,955	11,350,108	7,698,141	70,860,260
(2) 자산처분이익	5,839,935	467,802	351,524	236,293	6,895,554
(3) 배당금수익	5,015,708	317,266	-	-	5,332,974
(4) 이자수익	7,458,595	265,774	17,149	31,915	7,773,433
(5) 파생상품	606,881	23,610	-	-	630,491
(6) 외환차익 등	410,722	135,141	-	-	545,863
(7) 기타	145,211	14,552	372,439	134,310	666,512

〈사회보험상태표 작성 예시(FY2019)〉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1. 순자산변동	97,872,771	2,248,404	△5,213,888	2,104,819	97,012,106
(1) 투자증권평가 이익	55,401,432	1,069,071	223,814	1,186,687	57,881,004
(2) 투자증권평가 손실	△1,435,543	△347,987	-	-	△1,783,530
(3) 재정운영결과	△15,991,837	△834,948	5,436,354	△918,131	△12,308,562
(4) 기타	25,043,959	△3,602	△1,348	1	25,039,010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찬성(3명)
 - 추가적인 사회보험상태표 제공은 유용한 정보제공으로 의미가 있음
 - 국제기구도 사회보험을 별도의 제도단위(institution)로 고려하기에 별도 재무제표 신설에 찬성
 - 다만 사회보험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건강보험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상태표에서 각 기금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보여주는 것은 각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반대(5명)
 - 개선에 소요되는 노력에 비해 별도 공시의 효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사회보장사업 역시 국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사업 중 하나이므로 국가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사회보장성기금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보다, 통합정보를 일상행정 부문과 사회보장성기금 부문으로 구분한 부문별 정보를 제공하면 유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비교환수익명세표서(가칭) 신설

중앙정부는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않는 비교환거래가 다수인 점이 특징으로 민간과 차별성을 가짐. 사회복지, 국방, 교육 등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원가는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수익정보와 연관성이 높지 않으며, 일부 높은 분야는 프로그램

수익으로 보고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함. 재정운영 정보는 재정운영표를 통해, 국세수익 등 비교환수익과 관련된 정보는 '비교환수익명세표'를 통해 분리제공함으로써 국가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재무제표 체계를 갖추어 동시에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음. 현재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세금 포함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재무제표에서 공시하며, 미국과 일본은 개선안과 유사한 재무제표를 제공함

〈비교환수익명세표 작성 예시(FY2019)〉

(단위: 원)

구 분	FY2019	FY2018
I. 국세수익	291,845,619,606,666	294,910,486,322,993
1. 소득세수익	88,962,576,371,960	89,528,460,858,604
2. 법인세수익	72,757,692,902,755	72,951,019,491,709
3. 부가가치세수익	77,471,400,714,983	77,498,505,524,963
4. 기타국세수익	59,225,032,894,635	61,436,221,105,669
5. 대손상각비	△6,571,083,277,667	△6,503,720,657,952
II. 국세외비교환수익	41,767,116,509,809	41,640,862,835,596
1. 사회보험수익	19,048,249,004,970	17,903,040,191,660
2. 부담금수익	17,541,831,461,238	17,598,972,899,824
3. 벌금수익	2,532,212,995,270	3,062,937,314,150
4. 가산금수익	1,498,414,660,871	1,761,000,190,621
5. 기타비교환수익	1,146,408,387,460	1,314,912,239,341
III. 재원조달및이전	18,119,062,039,764	14,592,667,136,654
1. 무상이전수입	12,671,750,658,588	9,840,624,522,480
2. 기타재원조달	5,905,302,791,460	5,390,118,324,486
3. 무상이전지출	△25,152,570	△234,968,340
4. 기타재원이전	△457,966,257,714	△637,840,741,972
IV. 재정운영순원가	394,711,319,311,535	343,375,446,753,279
V. 재정운영결과	42,979,521,155,296	△7,768,569,541,964

〈참고: 현행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 공시내역〉

(단위: 원)

구 분	FY2019	FY2018
II. 비교환수익 등	351,731,798,156,239	351,144,016,295,243
1. 국세수익	291,845,619,606,666	294,910,486,322,993
(1) 국세수익	298,416,702,884,333	301,414,206,980,945
(2) 대손상각비	6,574,563,880,424	6,503,725,150,164
(3) 대손충당금환입	3,480,602,757	4,492,212
2. 부담금수익	17,541,831,461,238	17,598,972,899,824
3. 제재금수익	4,596,050,997,667	5,704,809,286,834
4. 사회보험수익	19,048,249,004,970	17,903,040,191,660
5. 채무면제이익	53,792,936,500	55,111,648,921
6. 기타비교환수익	527,192,109,434	378,928,808,357
7.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8,119,062,039,764	14,592,667,136,654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의견

- 찬성(1명)
 - 사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부처 재정운영표에서 비교환수익을 제외하는 경우 징수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반대(7명)
 - 재정운영표를 비교환수익을 총액으로 표시하는 분야별 국가재정운영표로 대체하고, 부속명세서로 비교환수익명세서를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
 - 재정운영표에서 분리할 시 재정운영 결과의 산출 과정을 제시하기 어려움
 - 비교환수익 명세서를 재무제표의 하나로 격상함으로써 연계 될 추가적인 효익이 명확하지 않음
 - 재정운영과 수익정보가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경우 국가재무정보의 한계점이자 특성이 라고 판단되어, 연관성만으로 정보의 분리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음
 - 교환, 비교환에 대한 IPSAS의 개념이 완전히 변경되고 있으므로 비교환수익, 비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현행 재정운영표 본문에 부처별 순위가 항목을 줄이고, 비교환수익의 주요 항목은 추가하여 간소화하고, 분야 및 성질별 순위가와 비교환수익의 상세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4분기 정례회의 안건분석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2020년 12월, 온라인 방식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뉴스레터는 논의된 주요 안건의 내용과 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IPSASB 안건분석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관련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PSASB) <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virtual-meeting-0>

프로젝트	안건
가. 측정	안건 3: ED 77, 측정(ED 77, Measurement)
나. 개념체계 일부 개정	안건 4: ED 76, 개념체계 일부 개정 (ED 76, Conceptual Framework-Limited Scope Update)
다. 유산, 사회기반시설	안건 5: ED 78, ‘IPSAS 17 개정’, 유산자산과 사회기반시설 (ED 78, ‘IPSAS 17 Update’, Heritage and Infrastructure)
라. 리스	안건 6: ED 75, 리스(ED 75, Leases)
마. 자연자원	안건 7: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바. 수익, 비교환비용	안건 8: 수익 및 이전비용: ED 70~72 (Revenue & Transfer Expenses: ED 70~72)

가. 측정 (Measurement)

측정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실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와 개별 기준서의 측정 규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 자산·부채의 측정기준과 측정방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준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4Q 정례회의에서는 공개초안 ED 77, 측정을 승인하고, “현행서비스가치”, “사용가치” 등이 논의되었다.

프로젝트 단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IPSASB Staff는 IFRS 13의 “공정가치”와는 독립적으로 **현행서비스가치(Current Service Value) 측정기준을 개발**하고,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현행 서비스가치란 측정일 현재 자산의 서비스 잠재력을 대체하기 위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IPSASB 위원들은 제시된 현행서비스가치의 측정 원칙과 지침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ED 77, 측정**에서 사용가치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사용가치는 손상 회계처리 시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개념체계 및 측정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나. 개념체계 일부 개정 (Conceptual Framework-Limited Scope Update)

IPSASB는 2014년 개념체계를 발표하였으며, 다음의 이유로 개정으로 검토하고 있다. IFRS의 개념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IPSAS 기준의 개발 및 2014년 9월 이후 승인된 IPSAS 기준서의 활용에 적합한 개념체계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이슈에 대한 개념체계를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 중에 있으며, 현재 **ED 76, 개념체계 일부 개정**을 개발하고 논의 중에 있다.

프로젝트 단계	2020년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ED 76, 개념체계 일부 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측정의 서열체계를 도입하고, 자산의 측정기준으로 **현행서비스가치를 도입**하였으며, 자산과 부채의 측정기준으로 **공정가치를 도입**하였다. 측정 기준서 개발 과정에서 개념의 혼란과 IFRS와 차이를 발생시켜왔던 자산 및 부채의 **일부 측정기준(시장가치, 대체원가, 순판매가치, 해제원가, 인수가격)**은 삭제하였다.

IPSASB Staff가 IPSASB 위원들에게 요청한 6개의 의견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신규 추가되는 세 단계 ‘측정의 서열체계’에 동의 여부
 - * 세 단계 측정의 서열체계는 측정모형, 측정기준, 측정기법을 말함
- (2) 공정가치의 포함에 대한 동의 여부
- (3) 현행서비스가치의 포함에 대한 동의 여부
- (4) 사용가치 정의를 삭제하고 간략한 설명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 여부
- (5) 일부 측정기준의 삭제에 대한 동의 여부
 - ① 자산과 부채의 시장가치, ② 대체원가, ③ 순판매가격, ④ 해제원가, ⑤ 인수가격

다. 유산, 사회기반시설(Heritage, Infrastructure)

IPSASB가 추진 중인 유산자산, 사회기반시설 자산, 측정 프로젝트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IPSAS 17, 유형자산**의 개정을 위한 공개초안 **ED 78, ‘IPSAS 17 개정’, 유산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하여 논의 중에 있다.

프로젝트 단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	*	*	*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진행, 유산자산 프로젝트 진행 경과는 * 표시

IPSASB는 ED 78의 중간검토 결과, (1) 유산자산의 측정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유지하고, (2) IAS 16, ‘유형자산’의 개정사항을 포함하며, (3) 경과규정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IPSASB staff는 유형자산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IAS 16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경과규정을 개발하고, 최초로 유산자산을 회계처리하는 실체에 대해 소급적용을 면제하여 주는 규정을 개발하였다. 다만,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가치’를 유지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재무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로, 운영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자산은 현행서비스가치로 측정하므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차이 조정은 불필요하므로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IPSASB 안건(프로젝트)으로 인한 ED 78의 개정 필요 여부 및 실행일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개발 중인 IPSASB 안건	내용	시행일 영향
반영 필요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ED 78 문단 62, 63, 66	ED 78의 시행일은 이들 공개초안이 모두 시행된 이후로 설정되어야 함
	ED 75, 리스	ED 78 문단 4, 5, 9, 23, 61, 63	
	ED 77, 측정	측정 프로젝트 결과 기반영	
	ED 79,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ED 78 문단 3, 62, 67, 73, AG26	
미반영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유형자산의 무상·저가취득 표현 시 비교환거래가 여전히 유용함	없음
	ED 72, 이전비용 ED 76, 개념체계 일부 개정	ED 78과 관련된 원칙이 없음	

IPSASB는 ED 78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의견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IPSAS 17** 적용 시 복잡성을 유발하는 유산자산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 (2) **ED 78**의 실무적용지침이 유산자산의 중요한 문제를 모두 해결했는지 여부
- (3) **IPSAS 17** 적용 시 복잡성을 유발하는 사회기반시설자산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 (4) **ED 78**의 실무적용지침이 사회기반시설자산의 중요한 문제를 모두 해결했는지 여부
- (5) 제안된 유산자산 범위(유산자산 제외항목)에 동의 여부
- (6) 운영목적으로 보유한 유형자산의 경우 현행서비스가치로 측정하는 것에 동의 여부
- (7) 재무목적으로 보유한 유형자산의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에 동의 여부

라. 리스 (Leases)

IFRS 16, 리스가 개정(16.1)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합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문 특정 이슈인 ‘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s)’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IPSAS 13, 리스**를 대체할 신규 리스 기준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 단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	하	상	하	상	하	1Q	2Q	3Q	4Q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리스 식별 시 공공부문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서비스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적용지침을 유지하고 결론도출근거(BC46~BC50)에 관련

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ED 75, 리스의 “공정가치” 정의를 IFRS 13, 공정가치 측정 및 개발 중인 ED 77, 측정과 일치시킬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나, ED 75의 현재 용어 정의를 유지하고, 결론도출근거(BC43~BC45)에 관련 논거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용어의 품질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정보요청서(RFI)의 수정사항을 승인하고, 공식적인 제정절차(Due Process and Working Procedures)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ED 75, 리스는 2021년 1월에 발표하고, 4개월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마.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

자연자원의 정확한 측정은 환경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관련된 지침이 부족하다. IPSASB는 자연자원의 인식과 측정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회계처리 방법을 고안할 목적으로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자문보고서는 1단계 과제인 지하자원, 생물자원, 물을 주제로 개발 중에 있다.

프로젝트 단계	2020년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자연자원 자문보고서는 총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3Q 회의에서 제1장 자연자원의 일반개요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제2장 지하자원(Subsoil resources)의 초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T/F는 초안에서 다음의 예비적 견해를 제안하였다. (1) 특정 국가에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개발되지 않은 지하자원에 대한 실체의 통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즉, 지하자원이 자산 인식기준에 부합할 수 있음), (2) 지하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고 해도, 측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산 인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3) 탐사, 평가, 개발 및 추출 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공공부문과 관련이 있음(관련 회계지침을 IPSAS 문헌에 통합하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2021년 3월 회의에서 IPSASB에 제출 예정)

탐사면허(exploration licenses)를 발행하는 국가권한(sov​er​eign power)은 개념체계에서 규정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IPSASB의 결정에 대하여 자문위원회(CAG)에서 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 수익, 비교환비용 (Revenue, Non-Exchange Expenses)

기존 수익과 비교환비용과 관련된 IPSAS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2014년 발표된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실무적으로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적용상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비교환비용 관련 규정의 미비로 모호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회계처리가 우려되었다.

모든 유형의 수익거래를 포괄하는 2개의 IPSAS 기준서와 이전비용의 인식·측정에 관한 1개의 IPSAS 기준서의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로젝트 단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IPSASB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D 70, ED 71, ED 72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총 197개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71개,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63개, ED 72, 이전비용: 63개

예비분석 결과,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중요 주제(key themes)를 4가지로 종합하였다.

- ① 공개초안 간의 관계: 수행의무(ED 70)와 현재의무(ED 71)의 구분이 모호하며, 수행의무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처리가 유사하므로 ED 70과 ED 71의 분리가 불필요할 수 있다. ED 72의 수행의무 없는 이전비용 회계처리가 ED 71의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회계처리와 대칭되지 않는다.
- ② 실무 적용: 공개초안이 너무 길고 복잡하며, 공공부문의 특성과 규정의 복잡성, 도입비용 고려 시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수행의무의 이행에 대한 감독이 어려워 감독 가능 여부를 자의적으로 분류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무상 수행의무와 현재의무의 분리 또는 수행의무가 있는 이전비용과 현재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의 분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③ 공시범위: ED 70, ED 71의 공시사항은 공공부문 거래와 무관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ED 72의 공시사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편이 요구되며, 수익 관련 공시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 공시 대상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당해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추가 지침: 수익 회계처리 관련 지침과 명확한 측정 원칙을 위한 지침 및 사례가 추가되어야 한다. 수행의무 이행의 감독 여부 및 수행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다른 IPSAS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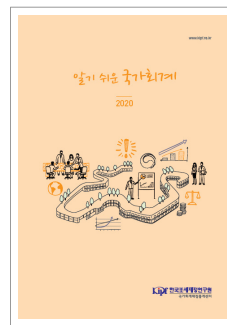
5 『Government Accounting at a Glance: Central Government | Korea』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국가회계에 관해 보다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 이용자를 위한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20』의 발간에 이어, 해외 이용자를 위한 『Government Accounting at a Glance: Central Government | Korea』를 첫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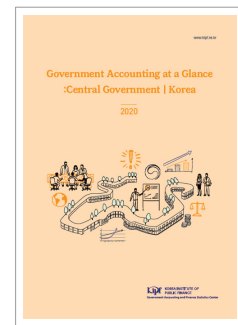
『Government Accounting at a Glance: Central Government | Korea』는 해외 정부 재무제표 작성자, 정부회계기준 제정자,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 국가회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art 1. 한국 국가회계의 발생주의 역사, Part 2. 한국 국가회계제도의 체계, Part 3. 한국의 요약 재무제표”로 구성하였다. 특히, 한국의 중앙정부 발생주의 회계제도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설립 배경, 역할, 조직 체계를 도입부에 추가하여 향후 국제협력 및 해외 공동연구 수행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센터는 고품질의 공공부문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공공 재정관리를 위한 재무정보 산출 및 보고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의 현안 이슈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영문 번역본인 『Enforcement Rule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와 『Government Accounting at a Glance: Central Government | Korea』의 발



〈국문 버전〉



〈영문 버전〉

간을 시작으로 한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영문화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한국 중앙정부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내외 관심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본 책자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문(https://www.kipf.re.kr/gafsc/Publication/publication_Report/kiPublish/CA/Center/view.do?serialNo=526521) 및 영문(<https://www.kipf.re.kr/gafsceng/Publication/Reports/kiPublish/ALL/view.do?serialNo=526521>)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6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정부 재무보고』 by WB

World Bank(이하 'WB')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관리와 재무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2020년 10월에 발간하였다.

WB의 보고서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정부 재무보고(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in Times of the COVID-19 Pandemic)』는 ① 코로나19와 대차대조표 접근법, ② 코로나19가 정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③ 정부들의 실제 작성예시, ④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을 위한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뉴스레터에는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으며,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4792>

WB는 20년 11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정부 재무보고(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in Times of the COVID-19 Pandemic)』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부터 비롯된 경제위기는 공공재정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각국 정부는 현재 직면한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비예산적인 방안을 포함한 대규모의 재정 패키지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의 발생과 수입이 급격하게 하락한 현 시점에서 재무보고의 적시성과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WB의 보고서는 정부가 팬데믹 상황 동안 기존의 재무보고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위기 후에 재무보고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운영성과 현재 재정상태 및 현금흐름에 대한 코로나의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자 한다.

가. 코로나19와 대차대조표 접근법

□ 적용한 회계방식에 따른 접근법

대차대조표 접근법이란 정부 재무제표의 관점에서 재정정책을 보는 것이다. 국가가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의사결정자의 성향뿐만 아니라 회계 및 재무보고 시스템에 크게 좌우된다. 다만, 현재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재무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보장된다면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중 어느 회계를 사용하는지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비상사태를 감안할 때 정부는 현금주의 회계에 근거하더라도 기존 재무정보와 재무보고서를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현금주의 기반 재무제표를 통해 수입의 감소와 지출의 증가, 이에 따른 적자와 순공공부채의 증가와 같은 즉각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현금주의 회계는 코로나19 시대의 재정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할 경우 효과적이다. 현금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주석상에 부채 잔액, 수년간 자본 투자의 누적 잔액, 예산 외 항목에 대한 추가 명세서 등을 보완하여 어느 정도 재정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의 대응 준비의 포괄적인 개요를 보려면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더 유용하다. 발생주의 재무정보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분석과 우발부채 정보, 미인출 차입금(undrawn borrowing facilities) 등과

같은 정보 공시를 포함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완전한 개요를 제공하는 대차대조표가 제공된다. 벤치마킹 및 최상의 국제 관행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정부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발생주의 회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재무제표의 적시성과 중간재무보고

재무제표가 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회계연도 말 이후 적정한 기간 이내에 공개되어야 한다(국가별 법령은 회계연도 말 기준 3~6 개월 이내 공시를 제안하며, 해당 기간이 지날 경우 정보의 유용성 저하). 중간재무보고는 분기별, 월별, 주별, 일별로 작성되어 적시성 측면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추가공시(commentary)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중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제고한다.

□ 장기재정건전성 보고

장기재정건전성 보고는 재정성과와 재정상태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규모 팬데믹 대응방안은 장기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기재정건전성 보고의 정보는 이에 더욱 적합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계속기업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가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실체의 능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주석에 정부 실체의 계속기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한다.

나. 코로나19가 정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각국의 상황에 따라 영향의 정도는 상이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정부의 재정운영성과, 재정상태 및 현금 흐름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예

상되며, 대유행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계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재정운영표(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국제수익은 봉쇄조치 등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음(타격을 입은 주요 산업: 제조, 소매, 건설, 관광, 식품). 부가가치세 수익의 급감은 수익의 감소에 큰 부분을 차지하며,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또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 	수익	가능한 영향
	국세	감소
	제재금수익	감소
	교환수익	감소
	기타 정부실체 이전금(지방)	증가
	기타 수익	감소
	총수익	감소
	비용	가능한 영향
	일반공공행정	증가 또는 감소
	국방	변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공공보건, 실업 수당, 사회보장제도, 보조금, 공기업 및 정부기관 대여금 등의 증가로 인해 정부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임 	공공질서 및 안전	증가 또는 감소
	교육	감소
	보건	증가
	사회보호	증가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감소
	오락, 문화 및 종교	감소
	경제활동	감소
	환경보호	감소
	금융비용	증가 또는 감소
	기타 비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별 잉여(결손): 낮은 수익과 높은 비용의 결과로 결손금 증가 	총비용	증가
	관계실체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share of surplus of associates)	감소
	기간별 잉여(결손)	결손금 증가

〈표 2〉 재정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손상: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및 공기업과 기타 회계실체 대여금의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여부를 평가해야 함 	자산		가능한 영향	
	<i>유동자산</i>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감소
	미수채권			감소
	재고자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채무(Public Debt): 팬데믹으로 인한 낮은 수익과 높은 비용의 결과로 공공부채는 예측치보다 증가할 것임 	<i>기타 유동자산</i>			
	미수채권			증가 또는 감소
	관계기관 투자금			증가 또는 감소
	유형자산			변화 없음
	무형자산			증가 또는 감소
	기타비유동자산			증가 또는 감소
	총자산			감소
	부채		가능한 영향	
<i>유동부채</i>				
미지급금(연체금)			증가	
차입금			증가	
단기충당부채			증가	
복리후생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당부채: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한 충당부채의 재조정이 필요함 	<i>비유동부채</i>			
	미지급금			증가
	차입금			증가
	장기충당부채			증가
	복리후생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충당부채: 코로나19로 인해 중양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유지함으로 연금부채의 상승을 초래할 것임 	총부채			증가
	순자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산/자본: 재정상태표상의 대부분의 부채가 증가하고, 다수의 자산의 손상의 결과 순자산/자본은 감소함 	순자산 및 자본		가능한 영향	
	적립금			감소
	잉여금(결손금) 누계			결손금 증가
	비지배지분			증가 또는 감소
	총순자산 및 자본			감소

〈표 3〉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현금흐름	가능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활동: 국세수취가 낮아지고, 전반적인 비용지급이 증가하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으로 낮아질 것임 	영업활동현금흐름		
	수입액		
	국세수취	낮음	
	재화 및 용역 판매비	낮음	
	보조금	높음 또는 낮음	
	이자의 수취	낮음	
	기타수취	낮음	
	지급금		
	복리후생비	(낮음)	
	공급자	(높음 또는 낮음)	
이자의 지급	(낮음)		
기타지급금	(높음 또는 낮음)		
영업활동순현금흐름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활동: 정부의 공기업 및 기타 정부기관 대여금으로 인해 투자활동은 대규모의 현금유출을 촉발할 것임 	투자활동현금흐름		
	가능한 영향		
	유형자산의 취득	낮음	
	유형자산의 처분		
	재고자산의 취득	(낮음)	
	재고자산의 처분	낮음	
	투자활동순현금흐름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활동: 차입금의 증가로 인해 재무활동에 대규모의 현금유입이 나타날 것임 	재무활동현금흐름		
	가능한 영향		
	차입금 처분	높음	
	차입금 지급	낮음	
	재무활동순현금흐름		높음
	현금 및 현금성자산 순증감	감소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높음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낮음		

코로나19의 영향은 다음의 주석사항에서 비재무적인 정보로 다뤄질 수 있으며, 아래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① **보고기간 후 사건(Events after the Reporting Date)**: 코로나의 영향은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주석상에 다뤄질 수 있고, 그 영향은 각국의 재무보고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② **체납정보(Arrears)**: 정부는 대규모 코로나19 지출의 압력에 따른 지불기한이 지난 미지급 금액인 연체금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체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체납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정책 분석 및 지급능력 평가에 필요하며, 지급계정 내에서 공개가 권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확한 수치를 재무제표에 보고하기 위해 모든 체납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③ **특별 항목(Extraordinary Items)**: 정부는 성격상, 기능상, 행정상, 또는 그 밖의 사항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통상적인 분류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수입과 지출을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특별한 항목으로 보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PSAS에 따르면, 특별 항목은 “실체의 통상적인 활동과 분명히 구별되고, 빈번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실체의 통제나 영향력 밖에 있는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외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비상 대응을 위해 배치된 일부 자원이 이 정의를 분명히 충족시킬 수 있으며, 유행병의 영향만으로 발생한 수익과 지출에 포함된 중요한 항목을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유행의 영향을 확실하게 식별하고 별도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무제표 주석이나 재무제표 토론 및 분석에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세수 감소 및 정부지출 증가와 같은 항목을 코로나19의 영향만으로 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기적인 분류가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코로나19 우발부채와 지급보장(Contingent Liabilities and Guarantees)**: 코로나19로 인해 우발부채가 대차대조표에 인식되어야 할 충당부채로 변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해외차관에 대한 국가 보증,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대출 보증, 보험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우발부채에 대해 적절히 보고해야

한다.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 발생 가능한 기본 청구나 의무의 가능한 금액이나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는다. 공시해야 할 기타 우발부채에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과 같은 장기 약정이 포함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는 보증을 감시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이 요구될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그 시점에 신뢰성 있는 추정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이는 대차대조표상 충당부채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붕쇄가 운송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도로 교통(고속도로)과 항공(공항)에서 PPP의 맥락에서 주어진 보증 검토의 회계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만약 PPP의 운영자가 문제에 부딪히고 정부가 개입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장부에 전혀 다른 회계처리를 촉발할 수도 있다. 만약 정부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특성, 수령인 및 가격 그리고 자산에 대한 중요한 잔여 지분(예: 고속도로 또는 공항)을 통제하거나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정부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그에 상응하는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이는 중대한 PPP 협정을 체결한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공공채무(Public Debt)**: 공공채무는 중요한 요소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재무제표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거시 경제적 관점 및 재정관리 목적 측면에서 관심 대상이다. IPSAS는 정부 재정통계방법론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와 보완되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이익과 의무에 대한 모든 재무 추정치를 정부 전체의 재무보고서에 일관성 있게 파악함으로써 부채 및 부채보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현금주의로 보고를 하는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는 공공채무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무 관련 회계상의 이슈는 대출의 평가와 채무관리 비용의 계산이다. 발생주의 회계에 의한 양허 대출은 장부상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을 것이다. 공공채무는 적자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 공시는 지출과 상환의 붕괴, 대부업체에서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 외화로 표시된 공공채무의 환율 차이, 원금에 추가되는 이자 연체 또는 기타 원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⑥ **미사용 차입금(Undrawn Borrowings)**: 재무제표에는 미래 영업활동에 이용 가능한 미사용 차입금 및 자본약정을 공시하여야 하며, 이는 이러한 항목의 사용제

한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시는 코로나19에 의해 제기된 난제에 직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⑦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코로나19가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려면 보고 주체의 경계를 예산 중앙 정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 정부, 사회 보장 기금) 및 전체 정부(공기업 포함)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통합 수준에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현금주의 회계를 이용한 모든 현금영수증 및 지급액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나타낸다. 그들은 또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한다. 많은 공공부문 법인은 별도재무제표(즉, 자신의 법적 법인의 재무제표)를 발행한다. 개별적으로, 이러한 재무제표는 코로나19의 영업의 일부가 통제된 실체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제한된 견해를 제공한다. 연결재무제표가 없다면, 재무성과와 정부의 입장은 완전하지 않다. 연결재무제표가 없다면 다수의 별도재무제표를 접한 독자는 전체의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⑧ **국부펀드 또는 불황대비자금(Sovereign Wealth Funds or Rainy Day Funds)**: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 이하 SWF)나 기타 불황대비자금에서 자금을 이체해 투명하게 보고할 필요 없이 긴급지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수 있다. 많은 SWF는 재무제표를 발행하지 않으며, 그들의 재무정보는 정부의 연결재무제표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정책의 완화는 SWF의 전형적인 목표이므로,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일부 절감액을 지출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지출이 추정 예산일 경우, 예산집행 명세서에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정부의 은행계좌를 통과했다면, 현금흐름표에서 유입과 유출을 보고해야 한다.

⑨ **준재정 활동(Quasi-Fiscal Activities)**: 준재정 활동이란 정부 예산에서 특수관계자로 지출을 옮기기 위해 예산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부 운영이다. 그 예로는 중앙은행이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에 대출하고, 석

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인위적으로 낮은 에너지 가격을 지역 시민들에게 부과하거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 돈을 지불한다. **준재정 활동에는 정부 운영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될 것이나, 코로나19 재정지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자금지원에 의존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실체가 수행하는 준재정 활동은 정부의 적자나 정부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출의 전체 범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준재정 활동에 대한 내용기술을 주석이나 결산개요(토론과 분석)에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다. 정부들의 실제 작성예시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에서 각국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소통하는 예시를 소개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3년부터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보고실체는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조직을 뜻하며, 지방정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IPSAS와 유사한 캐나다공공부문회계기준(Canadi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020년 4월 「**시나리오 분석 업데이트: 코로나19 팬데믹과 유가 충격(Scenario analysis update: COVID-19 pandemic and oil price shock)**」⁶⁾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예산적자 등을 발표했다.

인도는 주로 현금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채무나 예산의 항목 등 발생주의 정보를 포함한 추가적인 정보를 산출하고 있으며, 해당 추가 정보는 정부 재무제표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6월까지 인도는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봉쇄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를 포함한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자의 증가를 「**거시경제보고서(Macroeconomy report)**」⁷⁾를 통해 공개했다.

6) https://www.pbo-dpb.gc.ca/web/default/files/Documents/Reports/RP-2021-005-S/RP-2021-005-S_en.pdf.

7) https://dea.gov.in/sites/default/files/April_2020.pdf.

뉴질랜드는 1992년부터 발생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2015년부터는 IPSAS를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보고 주체는 국가 정부에 의해 통제 되는 모든 조직을 포함하지만 하위 수준의 정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2020년 3월 「예산 경제와 재정 업데이트 2020(Budget economic and fiscal update 2020)」⁸⁾을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추가 공시항목이 포함된 현금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① 정부의 모든 부처를 포함한 재무제표, ② 공공회계실체를 포함한 재무제표, ③ 국가수익기금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2020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보충적 예산 분석(Supplementary budget review)」⁹⁾을 발표하여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지출 조달 현황과 G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등을 발표했다.

영국의 경우 2010년부터 발생주의 통합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IPSAS와 유사하고 공공부문의 상황에 맞게 해석한 IFRS를 기반으로 공기업, 하위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8천개 이상의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운영표와 재정상태표를 작성한다. 영국정부는 「공공부문재정에 대한 논평: 2020년 4월(Commentary on the public sector finances: April 2020)」¹⁰⁾에서 2020년 4월 한 달 동안의 예산적자 증가분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영향에 대해 보고했다.

8) <https://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20-07/befu20-v2.pdf>.

9) <http://www.treasury.gov.za/documents/national%20budget/2020S/review/FullSBR.pdf>.

10) <https://obr.uk/docs/May-2020-PSF-Commentary.pdf>.

라. 재무제표 작성자와 회계 감사인을 위한 제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 재무제표 작성자를 위한 제안 조치〉

1. 정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작성(현재 채택 중인 회계기반(현금주의, 발생주의) 내에서 작성)
2. 팬데믹 대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재무제표를 발간하고, 중간재무보고 고려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과 IT 툴(Information Technology Tool)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적시성 제고
4. 재무제표 분석 결과를 발간하고 공공재정에 미친 팬데믹의 영향 설명
5. 실제의 장기재정건전성에 팬데믹의 영향을 반영하여 보고
6.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과 연계하여 발생주의 회계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 지속
7. 정부 전체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과 절차 마련
8. 계속사업 분석을 통해 향후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서비스 역량에 타격 없이 필수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을 별도로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9. 실제의 재무제표가 계속기업가정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10. 정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코로나19가 정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고려
11. 감사원과의 독립적인 협력을 통해 적절한 책임성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 수립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 감사인을 위한 제안 조치〉

1. 재무제표 작성자와 협력하여 감사된 재무제표를 적시에 발행할 수 있는 방법 모색
2. 재무정보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통합재무관리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에 대한 감사 수행
3.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시스템으로의 이행 지원
4. 정부의 시스템과 다양한 통합 수준에서 재무제표 통합 절차 검토
5. 계속기업의 가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평가
6. 정부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코로나19가 정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고려

7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by OECD

OECD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관리와 재무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2020년 11월에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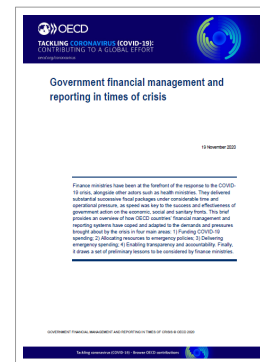
OECD의 보고서인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in Times of Crisis)』는 ① 코로나19 재정지출의 재원조달, ② 긴급 정책을 위한 재원분배, ③ 긴급 재정지출의 제공, ④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⑤ 교훈과 향후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사례를 보고하였다.

본 뉴스레터에는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으며,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government-financial-management-and-reporting-in-times-of-crisis-3f87c7d8/>

OECD는 20년 11월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in Times of Crisis)』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재무부에서 도입한 재정관리와 재무보고를 소개하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 재무부에서 위기 상황에 적절한 재정정책(fiscal packages)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시스템이 위기로 인한 요구와 압력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했는지에 대해 코로나19 재정지출의 조달 및 긴급 정책을 위한 재원분배, 긴급 재정지출의 제공,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내용〉

-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COVID-19) 발생으로 정부는 일시적으로 활동이 얼어붙은 의료부문, 가계 및 경제의 여러 부문에 긴급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됨
- 비상지원(emergency support)에 대한 시간과 운영상의 압박 및 극심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예산집행 방식(traditional conduct of budgeting)의 유지가 어려움. 대부분 예산 프로세스의 중요한 특징인 고정된 예산일정(fixed budget calendar), 예산 프로세스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 및 재정 예측,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배분(allocation of resources), 예산 내 모든 지출의 창구 등을 유지하기 어려움
- OECD 국가 전체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시스템은 새로운 정책 전달에 필요한 재원 추정 및 확보, 적시에 자금을 지출하고 배정된 자원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여 전염병이 야기하는 당면 과제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됨
- 위기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지출과 재원 마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에 특화된 연속적인 추가적 예산법 또는 기타 유형의 예산 법률이 제시됨. 재정 여건도 재정준칙을 유예하고 지출한도를 없앴으로써 완화됨
- 재정지원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한 유연성과 대응력은 OECD 회원국마다 다르게 처리됨. 일부는 연속적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다른 일부는 집행부에 예외적인 지출 권한을 부여(예: 후속 지출에 앞서 지출할 수 있는 허가)
-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코로나19 지출의 실행 속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새로운” 방식(Practice)을 채택함. 부처에 대한 신속한 할당(fast-tracking allocations), 조달 또는 지불, 재무프로세스의 간소화 등이 채택되었으며, 일부(예: 재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는 향후 정기적 방식에서도 고려될 수 있음
- 새로운 지출결정에 대한 명확성과 실행에 대한 투명성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주요 관심사임. 일부 재무부는 예산문서 및 재무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출 조치를 따로 표시함. 재정적 조치, 수혜자 등을 볼 수 있는 코로나19 웹사이트도 설립됨
- 위기 초기에는 민첩성과 속도가 가장 중요해졌으며, 입법 감독 및 내부 통제가 약화됨.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기적인 재정관리와 절차는 가능한 빨리 재개되어야 함. 또한 예산 프로세스의 일부 요소(예: 재정 리스크 관리)를 수정하거나 강화해야 할 수도 있음
- 재무부, 실행부서(delivery units), 의회, 최고 감사기관 등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점검(Stocktaking) 및 감사활동은 향후 비상사태에 대한 보다 나은 대처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개혁 노력이 큰 도움이 되어, 재정관리와 재무보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 코로나19 재정지출의 재원조달(Funding COVID-19 spending)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ECD 회원국의 3분의 1은 정부 부처나 관서가 국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범위(budget envelope) 내에서 계정과목 간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자금 재분배를 승인하였다(OECD, 2019)¹¹⁾.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은 긴급 상황과 미래 재정지출 부담을 위한 예비비(reserves)를 매년 예산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비는 호주, 그리스, 헝가리, 일본, 리투아니아 등의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해 동원되었다.

예비비의 지출과 재분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큰 유연성이나 재량권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따른 경기부양 및 결과 완화를 위한 실천방안(Action Plan for Economic Stimulus and Mitigation of Consequences of Coronavirus Transmission)」을 통해 정부에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재분배를 위한 추가적인 권한을 허용했다. 그러나 예산 재분배와 예비비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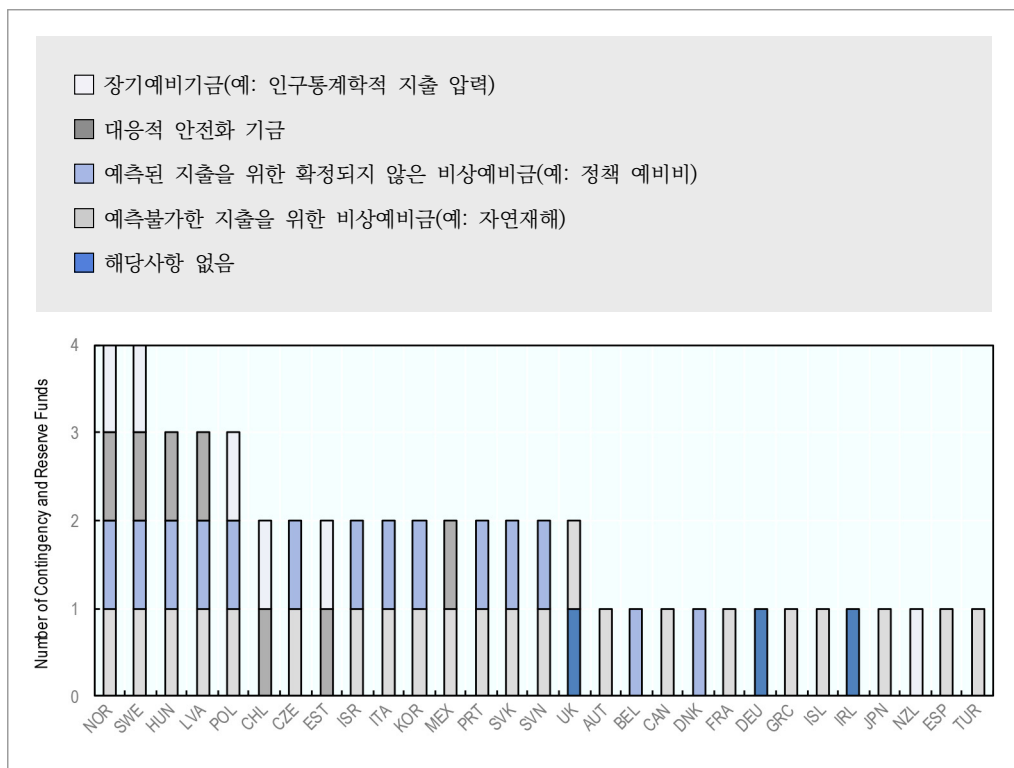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소규모”의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에 투입되는 것이 목적이며, **큰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황대비자금(rainy-day funds)”이 필요하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7개국만이 불황대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그림 1] 참조), 그마저도 사용 시 제한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7개국 중 노르웨이가 유일하게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불황대비자금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나 이상의 추경안 또는 다른 종류의 예산 관련 법률을 상정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세출예산의 재분배를 통해 신규 지출을 조달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기본법(Basic Law)을 개정하고 입법부에 보충예산법(Supplementary Budget Law)을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법령을 발행하여 비상사태 또는 정부폐쇄 방지를 목적으로 긴급하게 투입되는 예기치 못한**

11) OECD,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지출을 허용하는 권한이 부여되기도 한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몇몇 국가에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거나, 목적을 달리하여 사용했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칙령(royal decree)을 발행하여 법으로 정한 실업급여의 감소나 기한 만료를 동결했다.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정 조치를 허용하는 법을 통해 내각에 광범위한 지출 권한을 부여하고 연방 고용인력개발부 장관에게 고용보험법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림 1] 비상자금 및 예비비 현황(Number of contingency and reserve funds)



출처: OECD,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나. 긴급정책을 위한 자원분배 (Allocating resources to emergency policies)

정부가 경제와 가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새로운 정책과 최초의 추가경정예산법이 국회에서 상정될 당시 추가 재원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를 항상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막대한 수준의 불확실성은 여러 방법을 통해 다뤄졌으며, 때로는 의회 감독의 시간과 범위를 제한하기도 했다.

일부 국가는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스웨덴 정부는 춘계 재정정책 법안(Spring Fiscal Policy Bill)에 수반되는 연속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 50년 만에 최초로 3번의 추가경정예산을 도입했으며, 스웨덴은 위기 상황이 명확해짐에 따라 11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입했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는 추가세출할당(subsequent appropriation)의 승인 이전에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정부는 지출 관련 세부정보를 작성하여 의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지출의 한도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의 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정책을 합법화하는 옴니버스 법안(Omnibus Bills)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재무장관과 보건장관에게 한도의 제한 없이 보건 관련 지출을 승인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의회의 승인 없이 현금을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위한 추가 예산 기금(Extra-budgetary Funds)이 사용되었다. 헝가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지출을 예산과 연계하지 않는 대신 두 개의 추가 예산 기금(extra-budgetary funds)을 편성했다. 두 개의 추가 예산 기금은 경제보호기금(Economic Protection Fund)과 질병통제기금(Disease Control Fund)이다. 경제보호기금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취업시장을 지원한다. 질병통제기금은 의료기기 구입과 컨테이너 형식의 임시응급병원(temporary emergency hospital)을 구축하는 보건 관련 지출을 조달한다. 해당 기금은 주정부 예산과 다국적 기업 및 금융부문에 대한 세금을 통해 조달된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상당한 비율로 ‘지급보증’과 같은 비현금(‘대차대조표’라고도 불림)적인 대응방안을 통해서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많은 국가에서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연도 적자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미래 재정 위험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네덜란드와 같은 재정위험관리체계(fiscal risks management framework)를 통해 신규 보증의 승인과 자원조달,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국가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정부 개입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덜란드 - 재정위험 관리체계를 통한 보증체계 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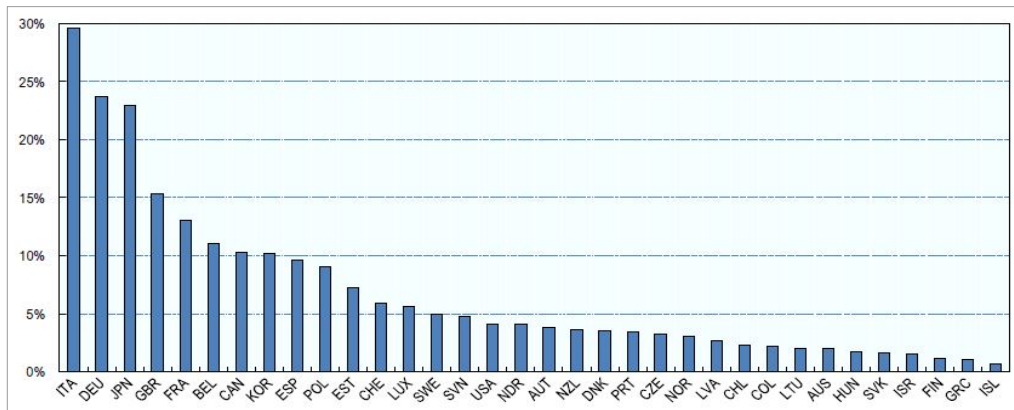
네덜란드 정부는 2015년에 우발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체계를 채택하여 우발부채의 전체 수준에 대한 상한선과 새로운 우발부채 인수 기준을 도입했음

새로운 개념체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함

- 소위 ‘아니오(no, unless)’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우선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새로운 우발부채(간접 보증, 대출 및 재정 개입 참여 포함)를 받지 않음
- 한도는 매년 우발부채, 특히 보증인에 대한 최대 수준을 설정함
 - 우발부채의 위험 프리미엄은 구현 비용과 손실 비용뿐만 아니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함

[그림 2] OECD 국가: 정부 대출 및 지급보증

(단위: 2019년 GDP 대비 %)



출처: 2020년 9월 기준 대중에 공개된 문서를 기반으로 한 OECD 분석 결과

다. 긴급 재정지출의 제공 (Delivering emergency spending)

코로나19 전염병 동안, 긴급 정책의 신속한 전달은 정부 조치의 성공과 효과의 열쇠였다. 호주, 일본, 스웨덴 등 일부 국가의 기존 절차와 통제는 위기 대응 요구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호주와 일본의 경우, 실체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증가를 적절히 인식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코로나19 지출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 절차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자금을 배정하였다.

조달(procurement)의 경우, 응급상황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를 법안을 통해 허용하는 사례도 있다. 프랑스는 “긴급 응급상태(compelling emergency)”를 조달 법규(Procurement Code)에서 다뤘으며, 조달 절차의 간소화를 승인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동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정 규정준수(fiscal compliance)”를 감독하는 부서의 신설이 간소화된 조달 절차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회계 담당자는 기업이 중앙 및 지방 정부 당국에 대한 세금 의무를 준수하는지 검증한다. 리투아니아에서는 공공조달법령(Law on Public Procurement)상에 코로나19 응급상황에서의 특정 조달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코로나19 지출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지출의 패스트 트랙(fast-tracking)이나 예산집행 절차의 간소화(streaming)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 이 경우 해당 신속성이 편의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패스트 트랙의 빠른 속도가 낮은 수준의 통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엄격한 모니터링을 수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예년보다 엄격한 통제와 부총리의 승인을 받아 예산 지출에 패스트 트랙이 사용되었다. 한국은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Financial Management Meeting)에 관계 부처(line ministries)들이 매주 참석하여 추경을 통해 도입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행정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집행의 가속화를 도모한다. 또한, 개별 지출의 승인과 통제에도 패스트 트랙이 사용되었다. 캐나다는 우선순위 승인절차(priority approval process)를 수립하고, 간소화하여 원격근무(telework)

나 가상환경(virtual environment)에서의 통상적인 승인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출력된 자료에 펜으로 직접 서명하던 승인 절차를 전자 메일 기반 워크플로우의 전자 승인으로 대체했다. 폴란드에서는, 일부 부문의 기관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기간이 단축되었다.

지불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급을 촉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기업의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실체는 즉시 지불 처리하고, 가능한 경우 조달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며, 제때에 납품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을 없앴다. 프랑스는 덴마크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지연된 경우 관련 위약금을 면제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재부문에 선급금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현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 지방정부의 상업부채 지불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슬로베니아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급 처리가 8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했다(기존 30일 소요).

라. 회계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Enabl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예외적인 예산집행절차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부 활동에 대한 신뢰성, 신규 지출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명확성 및 실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대부분의 정부가 맞이한 도전과제이다. OECD 회원국가별로 국가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다뤄졌다.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예산 문서에 포함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비용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 또는 챕터를 신설했다. 독일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관리를 위한 보호 실드(protective shield to manage the coronavirus pandemic)”는 예산에서 별도로 식별되며, 대책별 세부 비용, 적격성 기준, 대책별 행정절차 등 모든 코로나19 관련 신규 지출로 구성된다.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프로그램(단기 고용 및 자영업자 지원 포함)을 프로그램 기반 예산 명명법에 포함시켰으며, 지급 속도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를 통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슬로베니아는 프로그램 기반의 명명법을 적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식

별했으며, 특히 슬로베니아에서는 관련 보증 또한 별도로 식별한다.

캐나다와 슬로베니아처럼 특정 프로그램이나 예산 챕터가 없는 경우 태깅 시스템(tagging system)을 활용했다. 핀란드는 의회에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법에 추가경비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이들 정부의 공통적인 목적은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신규 지출의 목적적합성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예산안 개요, 소명서, 성과보고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등을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국회 의안정보관리 시스템에 게재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대응 계획(Response Plan)에 명시된 조치와 관련된 규칙, 요건 및 자금에 관한 정보를 개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정부는 정보공개 전용 웹사이트에 통합 정보를 게재한다. 아이슬란드와 영국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문서상에 별도의 챕터나 예산서를 만들지 않는 이상, 회계 규칙이나 기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출의 인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입법부 또는 감시기관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보고체계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으며, 일례로, 캐나다 감사관실(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지출을 월간 단위로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보고 조건을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별로, 그 목적과, 빈도수, 내용, 때로는 IT 시스템 및 계정차트에 따라 재무보고가 상이하다. 때때로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통상적인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 보고서 및 재무제표에서 “포착(captured)”된다. 그러나 재택근무와 기타 제약으로 인해 일부 국가(예: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는 2020년 예산 보고서의 발간이 몇 주간 지연되기도 했다.

다른 경우,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구축했다. 오스트리아는 추가경정예산법에 의해 코로나19 대응 시행을 위한 투표 결과를 매달, 4주 이내에 보고하므로 매월 말 보고가 이루어진다.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을 재정한 건에 대해 2020년 4월 20일

까지 재무부 장관이 재정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에 격주로 보고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의 일환으로 발행된 보증이나 대여금에 사용되는 대차대조표(또는 비현금) 조치(balance sheet measures)를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발생주의 회계체계가 있는 국가에서는 부채 및 우발부채가 통상적인 회계처리의 일부로 기록되었으나 해당 자료는 주로 연말에 발간된다. 따라서 시기적절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보증을 관리하기 위해 부채를 신설하여 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독일의 경우 보증 및 대여금에 관한 보고는 매월 갱신되고 조정되며, 해당 보고는 수익권자(beneficial owners)의 이름과 함께 공표된다. 영국에서는 보증 또는 기타 개입은 예산책임사무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의 미래재정전망(future fiscal forecasts)에 포함되며, 우발부채 승인체계는 매주 내부 보고 및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교훈과 향후 도전과제 (Preliminary lessons learned and future challenges)

OECD 국가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시스템은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속함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의회의 감시나 통제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정기적인 재정관리 프로세스는 가능한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 물론, 예산 프로세스의 일부 요소가 수정 또는 강화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정 프레임워크와 재정준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제와 공공재정 예측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예측에 대한 기존 위험과 새로운 위험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결정에 중요할 것이다.

긴급 지원 발표의 엄청난 규모와 이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구호금 실제 수령과 실제 집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관련 초기 보고서는 계획과 실행 간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긴급 임금 보조금(Emergency Wage Supplement)은 원래 830억 캐나다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예상보다 낮은 지원요청에 따라 600

억 캐나다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6개월 후의 영국의 예산 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20년 7월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 의사 결정권자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해관계자는 제2의 물결을 막기 위해 이용 가능한 추가 재정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며, 추가 비상 및 복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구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구한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시스템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과 감사활동이 필요하며, 개별 국가에서 얼마나 잘 수행되어 왔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비, 직접적인 의료지원 대응 및 광범위한 비상 대응에 대한 지출 등을 검토하는 코로나19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장래의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의 위기와 충격에 대비하여 제도적 탄력성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상 코로나19 지출을 추적 및 보고함에 있어 뉴질랜드는 2010 캔터베리 지진 관련 비용 보고를 통해 얻은 교훈을 고려했다.

막대한 긴급 지원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실제 투입된 지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또한, 사후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관리와 재무보고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감사 절차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당 감사 결과는 미래 위기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전의 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국가사례를 살펴보면, 재정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보증 제도에 대한 결정이 적절한 비용 및 리스크 분석(OECD, 2020),¹²⁾ 성과 예산 책정, 코로나19 식별 및 추적 등이 더 잘 이루어진 것을 강조한다. 이는 금융 관리와 보고의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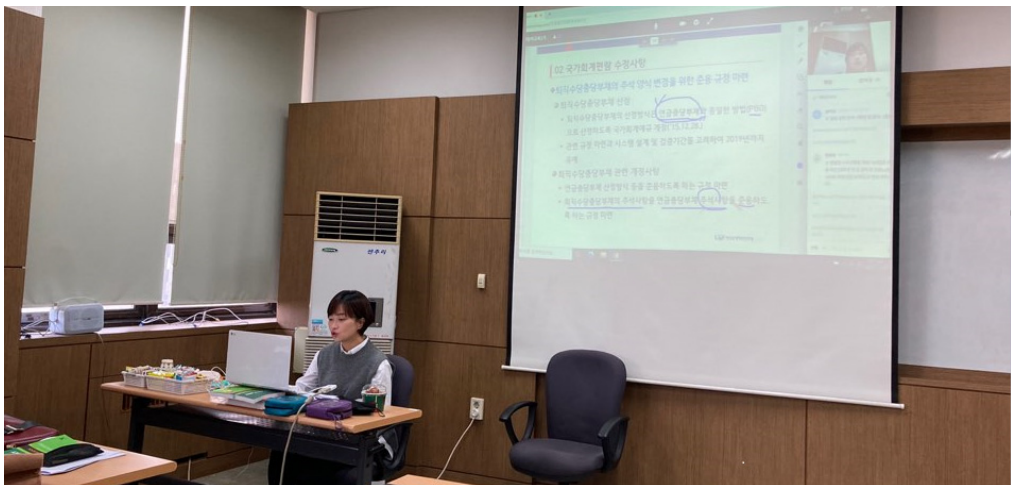
12) OECD, *OECD Best Practices for Managing Fiscal Risks: Lessons from case studies of selected OECD countries and next steps post COVID-19*, 2020.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1 2020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앞두고 「2020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을 발간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은 국가결산 개설, 결산보고서 작성양식, 디브레인(dBrain)을 통한 결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결산 주요 변동 및 유의사항 등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들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교육(11.27), FPSB Korea 교육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중앙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아닌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앙관서 결산교육에서는 결산담당자들에게 국가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으로 결산보고서 제출 일정과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및 2019

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2020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지난 7월 1일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회계 관계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2018년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존과 다르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재택교육 방식으로 진행하여 교육생들은 일정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일정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다.



〈제12차 재무결산실무 교육(실시간 온라인, 10.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8층 중회의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등 기본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에 파일럿 과정으로 진행하였던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을 본 과정에 편성하여 1회 추가로 진행하였다. 특히 10월에는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결산실무 과정이 2회(회당 2일간) 실시되었다. 본 과정은 국가 재무결산의 이해,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사례,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2020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수행 결과, 13회차에 걸쳐 총 1,439명(전년도 1,540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4.42점(전년도 4.63), 강의 만족도는 4.47점(전년도 4.57),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만족도는 4.40점(전년도 교육환경 만족도 4.69)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질의응답의 어려움, 오프라인 교육 대비 집중하기가 어려운 점 등 비대면 교육의 불편함이 일부 반영되어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전년도 대비 동일한 교육 차수를 운영하며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켰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2021년에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 신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6월부터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s://www.kipf.re.kr/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2020년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1월 18일 천안 소노벨에서 「2020년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 이주환 차장이 dBrain의 2020회계연도 개선사항 및 차세대 dBrain을 소개하였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윤성호 회계사가 2020 회계연도 지침 개정사항 및 재무결산 유의사항을 교육하였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의 범승형 이사를 초대하여 과거 발생한 주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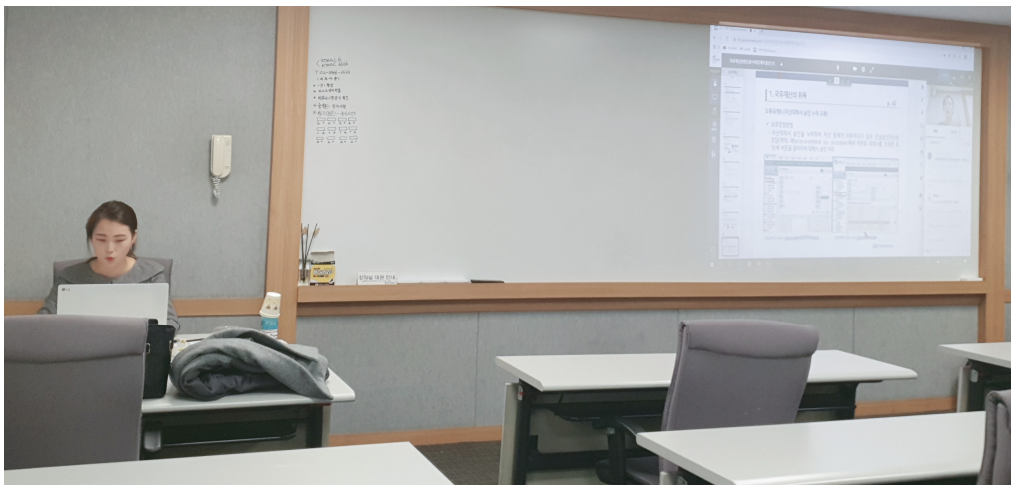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담당자 워크숍(11.18), 천안 소노벨〉

올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결산담당자 집합교육을 주관한 세 번째 해로, 교육 커리큘럼 및 강의 내용 그리고 운영진의 행사지원 개선 등으로 행사 만족도 (4.93/5.0만점)가 전년(4.84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4 2020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0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20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1차시(11.10), KMAC 마포 비즈니스스쿨 교육장〉

「2020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11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일선관서 결산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4,283명의 결산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정부결산 작성지침, 재무결산 오류사례, 국유재산 결산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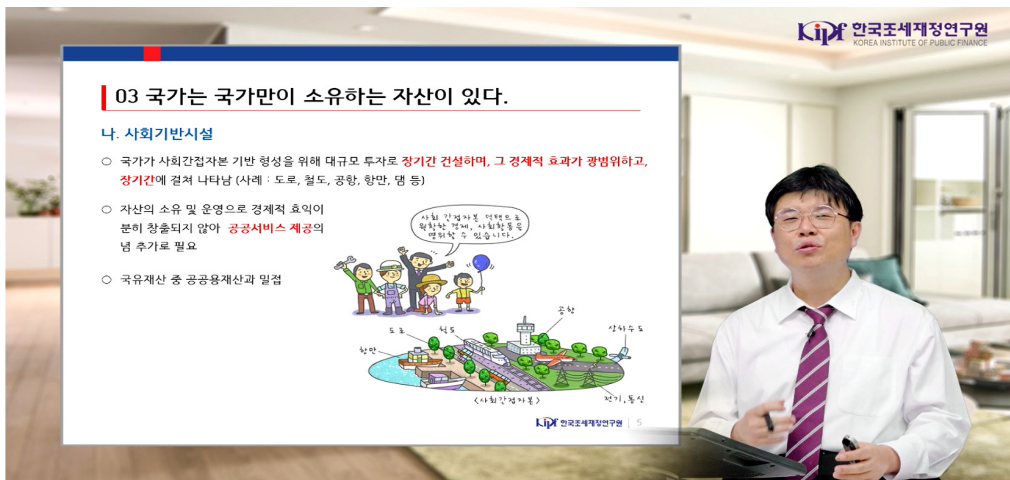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무결산 오류사례 강의를 통해 국유재산 관련 디브레인(dBrain) 업무 처리 시 발생하기 쉬운 재무결산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육하여 향후 일선관서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오류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국가회계이론교육 동영상 서비스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국가회계교육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이론 교육 중 일부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가회계이론 기초’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국가재무정보 기초사례 연습,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특성, 국가회계법령의 이해의 콘텐츠로 구성되었으며, 국가회계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과정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교육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하여 총 10개 차수가 차수당 30분을 넘지 않도록 구성되어 본인이 수강을 희망할 때, 원하는 과정을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해당 과정은 국가회계 전문교육 홈페이지(<https://www.kipf.re.kr/edu/>)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한 뒤에는 보다 상세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 국가회계 전문교육 본 과정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국가회계이론 기초 온라인 교육〉

03

재정통계 동향

1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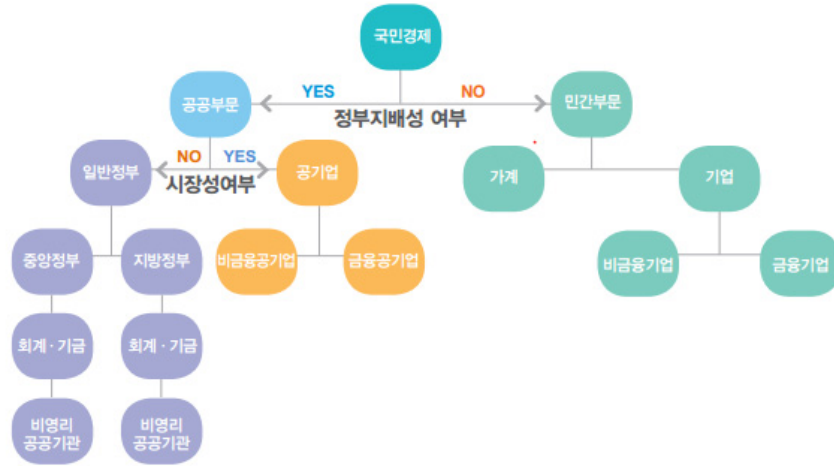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12월 24일(목)에 발표한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다음 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가. 산출 범위

1) 포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지배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포괄 범위를 설정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부문 Decision tree〉



- 정부지배성 여부 판정 기준 :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등을 보유한 경우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문으로 분류
- 시장성 여부 판정 기준 :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이 50%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이상이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정부로 분류

2019회계연도 공공부문 포괄 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484개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성이 없는 317개 기관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분류, 시장성이 있는 167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금융공기업(13개)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공기업(254개)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2) 부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채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채무상품은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미지급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나.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132.6조원(GDP 대비 59.0%)으로 전년 대비 54.6조원(GDP 대비 2.2%p) 증가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810.7조원(GDP 대비 42.2%)으로, 전년(759.7조) 대비 51.0조원, GDP 대비로는 2.2%p 증가하였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5.8조원(GDP 대비 20.6%)으로 전년(387.6조) 대비 8.2조원 증가하였고, GDP 대비 0.2%p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A+B-C)	1,078.0	56.8	1,132.6	59.0	54.6	2.2
A. 일반정부 부채(a+b-c)	759.7	40.0	810.7	42.2	51.0	2.2
a. 중앙정부	711.5	37.5	767.6	40.0	56.2	2.5
b. 지방정부	60.0	3.2	54.9	2.9	△5.1	△0.3
c. 내부거래	11.7	0.6	11.8	0.6	0.1	0.0
B. 비금융공기업 부채(a+b-c)	387.6	20.4	395.8	20.6	8.2	0.2
a. 중앙 공기업	353.9	18.6	359.9	18.8	5.9	0.1
b. 지방 공기업	41.8	2.2	43.7	2.3	1.8	0.1
c. 내부거래	8.2	0.4	7.8	0.4	△0.4	△0.0
C. 내부거래	69.3	3.7	73.9	3.9	4.6	0.2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20. 12. 24. 재작성

2) 부채항목별 현황

2019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채무증권 823.3조원, 차입금 120.4조원, 기타미지급 188.9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증권이 전체 부채의 72.7%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채무증권	774.0	71.8	823.3	72.7	49.3	0.9
▪ 차입금	121.8	11.3	120.4	10.6	△1.4	△0.7
▪ 기타 미지급	182.2	16.9	188.9	16.7	6.7	△0.2
합계	1,078.0	100.0	1,132.6	100.0	54.6	-

출처: 저자 작성

다. 공공부문 부채 부문별 증감 분석

1) 일반정부 부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각각 56.2조원 증가 및 5.1조원 감소하였고,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는 증가(0.1조)하여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51.0조원 증가한 810.7조원(GDP 대비 42.2%)이고 GDP 대비로는 2.2%p 증가하였다.

가) 중앙정부 부채

2019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711.5조원(GDP 대비 37.5%) 대비 56.2조원이 증가한 767.6조원(GDP 대비 40.0%)으로 산출되었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중앙정부	711.5	37.5	767.6	40.0	56.2	2.5
▪ 회계·기금	675.4	35.6	730.5	38.1	55.1	2.5
▪ 비영리기관	49.4	2.6	50.4	2.6	0.9	0.0
▪ 내부거래	△13.3	△0.7	△13.2	△0.7	0.1	0.0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20. 12. 24. 재작성

(1) 중앙회계·기금

2019회계연도의 중앙회계·기금은 전년 675.4조원(GDP 대비 35.6%) 대비 55.1조원이 증가한 730.5조원(GDP 대비 38.1%)으로 산출되었다.

(채무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발행한 공채가 0.9조원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가 47.6조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전년 대비 3.1조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구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 국채	650.5	701.4	50.9
■ 국고채	569.2	616.8	47.6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8	8.2	0.2
■ 국민주택채권	73.3	76.4	3.1
◆ 공채	19.1	18.2	△0.9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9	3.9	△2.0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3.3	14.4	1.1
◆ 자기 국·공채	118.4	116.7	△1.7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19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 2020.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금액 및 BTL 미지급금*이 전년 대비 각각 4.0조원 증가, 0.4조원 감소하였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한 일반 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의 금액

(단위: 조원)

구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 청약저축	68.3	72.3	4.0
◆ BTL 미지급금	9.6	9.2	△0.4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19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 2020.

(2) 비영리공공기관

2019 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은 전년 49.4조원(GDP 대비 2.6%) 대비 0.9조원이 증가한 50.4조원(GDP 대비 2.6%)으로 산출되었다.

기관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19년 신규로 '중소기업청년근로자및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사업이 포함되어 공제부금적립금 등 부채가 2.0조원 증가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보험료, 파산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예특채를 순상환하여 금융부채가 1.5조원 감소하였다.

나) 지방정부 부채

2019 회계연도의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 60.0조원(GDP 대비 3.2%) 대비 5.1조원이 감소한 54.9조원(GDP 대비 2.9%)으로 산출되었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지방정부 부채	60.0	3.2	54.9	2.9	△5.1	△0.3
▪ 회계·기금	59.5	3.1	54.8	2.9	△4.7	△0.3
▪ 비영리기관	1.0	0.1	0.9	0.0	△0.1	△0.0
▪ 내부거래	△0.6	△0.0	△0.8	△0.0	△0.3	△0.0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20. 12. 24. 재작성

(1) 지방회계·기금

2019회계연도의 지방회계·기금은 전년 59.5조원(GDP 대비 3.1%) 대비 4.7조원이 감소한 54.8조원(GDP 대비 2.9%)으로 산출되었으며,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가) 자치단체

전년 45.5조원 대비 2.1조원 증가한 47.6조원으로, 자치단체별 증감을 살펴보면 서울(2.4조), 인천 및 광주(0.3조) 등이 증가하였고, 경기도(△1.8조)가 감소하였다.

(나) 교육자치단체

전년 14.0조원 대비 6.8조원 감소한 7.2조원으로 장·단기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등이 줄어들어 감소하였다.

(2) 비영리공공기관

전년 1.0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한 0.9조원으로 증감내역에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387.6조원(GDP 대비 20.4%) 대비 8.2조원 증가한 395.8조원(GDP 대비 20.6%)으로 집계되었다. 중앙(5.9조) 및 지방(1.8조)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모두 증가하였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2.6조), 한국도로공사(1.1조), 한전·발전자회사(5.1조) 등 부채가 5.9조원 증가하였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은 SH공사(1.4조), 대구도시공사(0.6조) 등 부채가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비금융공기업 부채	387.6	20.4	395.8	20.6	8.2	0.2
▪ 중앙 비금융공기업	353.9	18.6	359.9	18.8	5.9	0.1
▪ 지방 비금융공기업	41.8	2.2	43.7	2.3	1.8	0.1
▪ 내부거래	△8.2	△0.4	△7.8	△0.4	0.4	0.0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20. 12. 24. 제작성

(LH) 임대물량 확대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1.7조)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수지 개선으로 차입금·공사채 상환(△3.4조) 등으로 전년 대비 2.6조원 감소하였다.

(한국도로공사)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증가로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하였다.

(한전·발전자회사)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하였다.

3) 추세 분석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비율*의 경우는 그 증가 추이가 점차 감소하다 2019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중앙회계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부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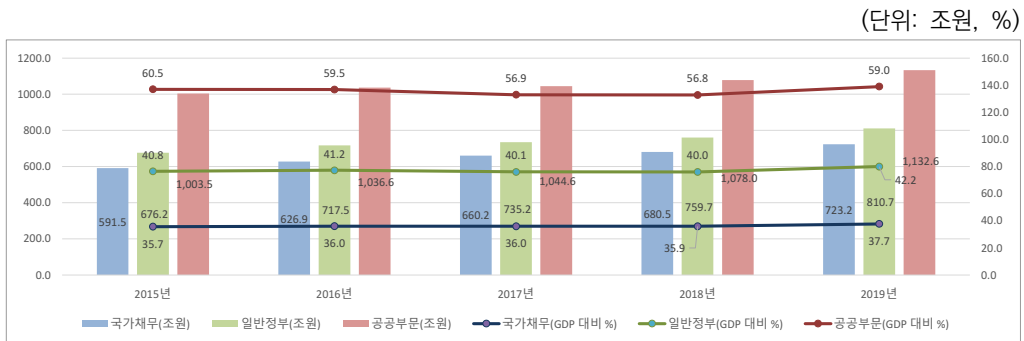
*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증감

국가채무 (D1): (2016년) 0.3%p → (2017년) 0.1%p → (2018년) △0.0%p → (2019년) 1.8%p

일반정부부채(D2): (2016년) 0.4%p → (2017년) △1.2%p → (2018년) 0.1%p → (2019년) 2.2%p

공공부문부채(D3): (2016년) △1.0%p → (2017년) △2.6%p → (2018년) △0.1%p → (2019년) 2.2%p

〈부채유형(D1, D2, D3)에 따른 연도별 추이〉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2020. 12. 24. 재작성

라. 국제 비교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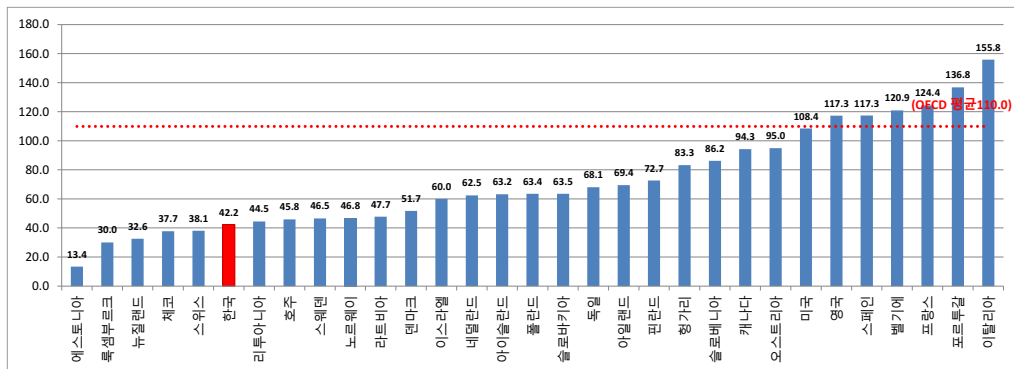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2019년 GDP 대비 42.2%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현재 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국가가 7개에 불과하여 정확한 국제 비교가 어렵지만,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가 공공부문 부채(D3)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32.8%)으로 금년의 경우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증가(8.2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2019년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단위: GDP 대비 %)



출처: 저자 작성

2 IMF 비금융자산 데이터 분석

가. 비금융자산 데이터 현황

□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이하 '재정통계') 자료를 통해 국가별 비금융자산의 수준, 추세 등을 분석함

- 재정통계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18년 기준 총 170개 국가가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IMF에 제출되어 IMF DATA에 공시되고 있음
- 작성되고 있는 재정통계 중 재정상태표(Table 6)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8년 기준 비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재정상태표(Table 6)를 작성하고 있는 국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비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재정상태표(Table 6)를 작성하는 국가 현황〉

구분	작성 국가		
	OECD 회원국	OECD 회원국 외	계
국가명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프랑스,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총 11개국)	알베니아, 브라질, 홍콩,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러시아, 산마리노공화국, 태국, 우크라이나, 키르기즈공화국, 몰도바 (총 11개국)	총 22개국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2018년 기준 일반정부 비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재정상태표를 작성하는 국가는 총 22개국이며, OECD 회원국 기준으로는 호주, 캐나다 등 11개 국가임
- 본 보고서에서는 37개 OECD 회원국 중 일반정부 비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재정상태표를 작성하는 11개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국가는 합계액 누락 등 수치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재정통계 데이터 한계로 인해 국가별로 데이터 범위가 상이한데, 분석 대상 11개국의 재정상태표(Table 6) 데이터 제공 범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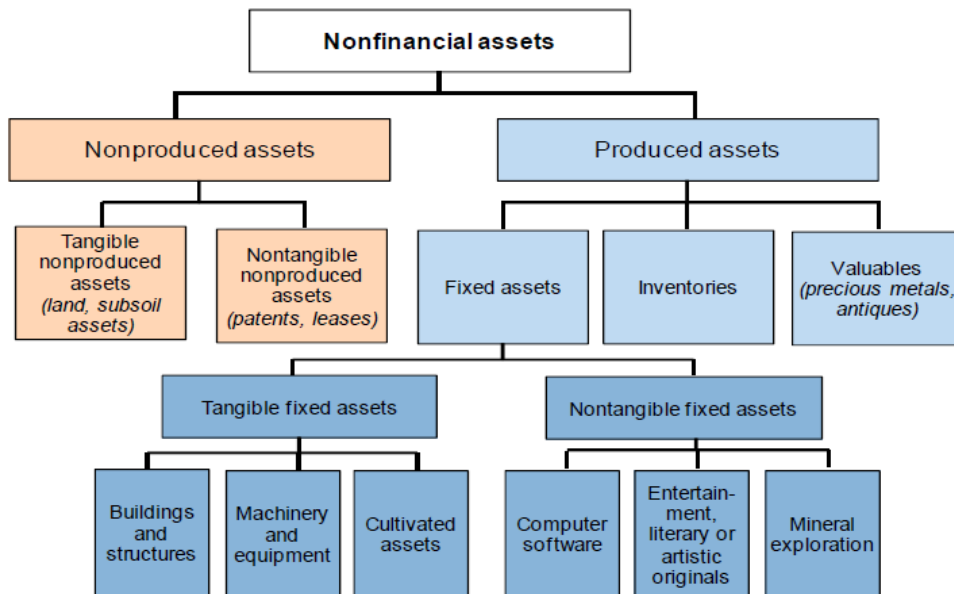
〈국가별 재정통계 데이터(Table 6) 범위〉

호주	1999~2018년	캐나다	1990~2018년
콜롬비아	2008~2018년	체코	1998~2018년
프랑스	1998~2018년	한국	2012~2018년
뉴질랜드	2009~2018년	스위스	1990~2018년
터키	2008~2018년	영국	1995~2018년
미국	2001~2018년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비금융자산은 크게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음
 - 생산자산은 고정자산, 재고자산, 가치저장자산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비생산 자산은 토지, 지하자원자산 등 유형비생산자산과 특허 등 무형비생산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음

〈비금융자산의 세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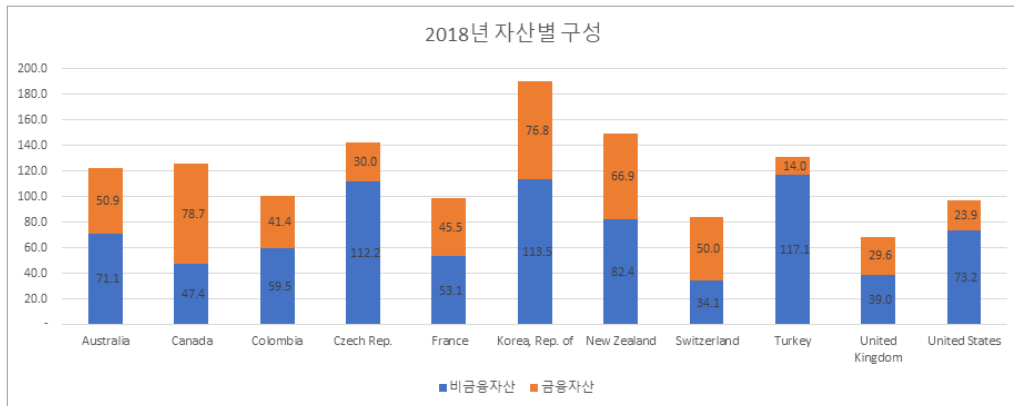
출처: IMF W/P, "Another Look at Governments' Balance Sheets: The Role of Nonfinancial Assets," Figure 1

□ 비금융자산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전에, 비금융자산이 정부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부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호주, 캐나다 등 OECD 11개국 일반정부의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국가별 2018년도 일반정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규모〉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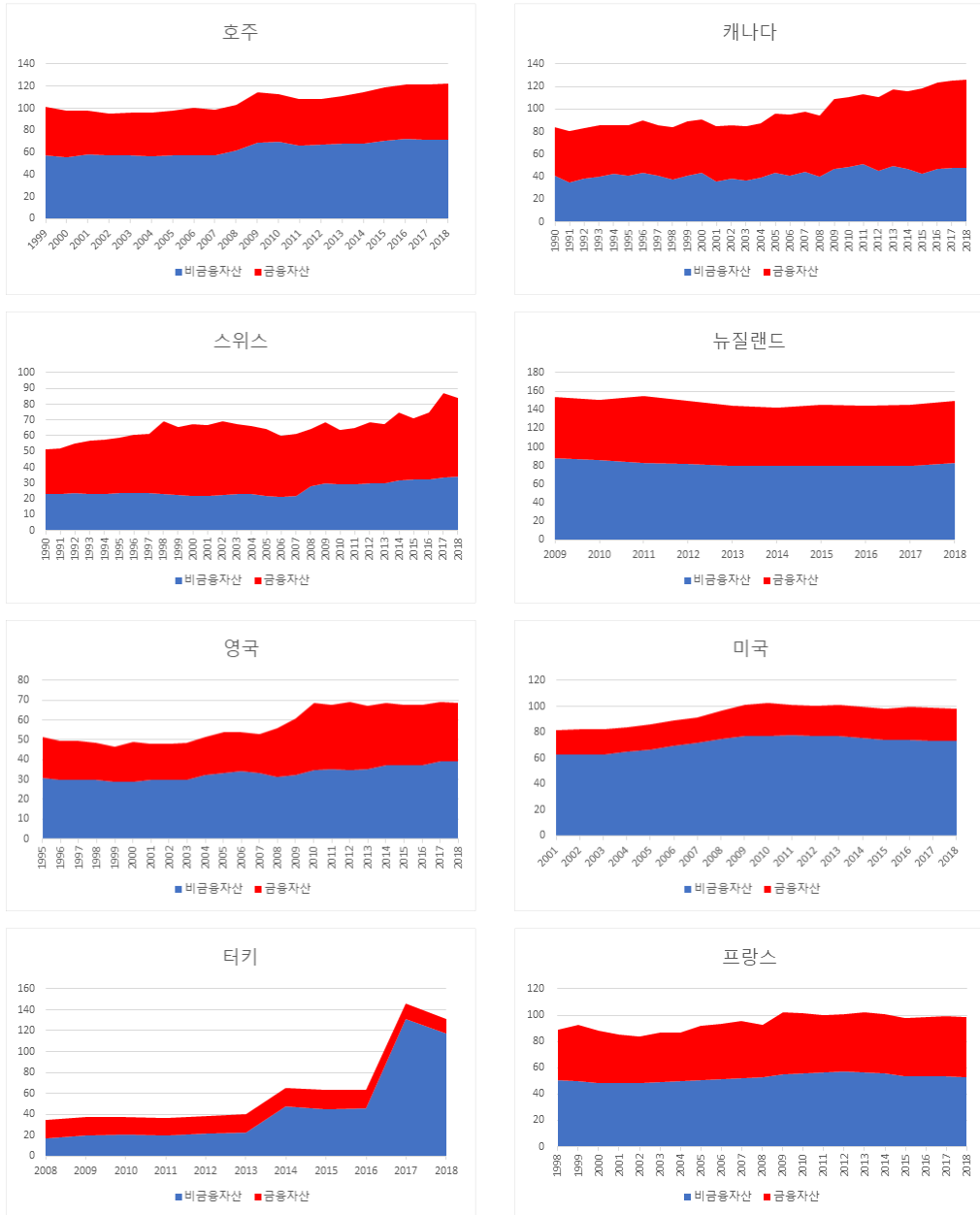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캐나다와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금융자산이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금융자산의 규모가 정부자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일반정부 비금융자산의 수준은 상이하며, 한국은 일반정부 비금융자산의 규모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
- 한편, OECD 주요국들의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연도별 규모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OECD 주요국의 연도별 일반정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규모〉

(단위: GDP 대비 %)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대부분 일반정부 비금융자산 규모는 GDP 대비 100% 이하이며, 체코와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비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터키의 경우 2017년에 일반정부 비금융자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IMF에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T3)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상적 거래를 통한 비금융자산 증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2017년 변동 내역의 98% 이상이 기타 내용 변화로 인한 효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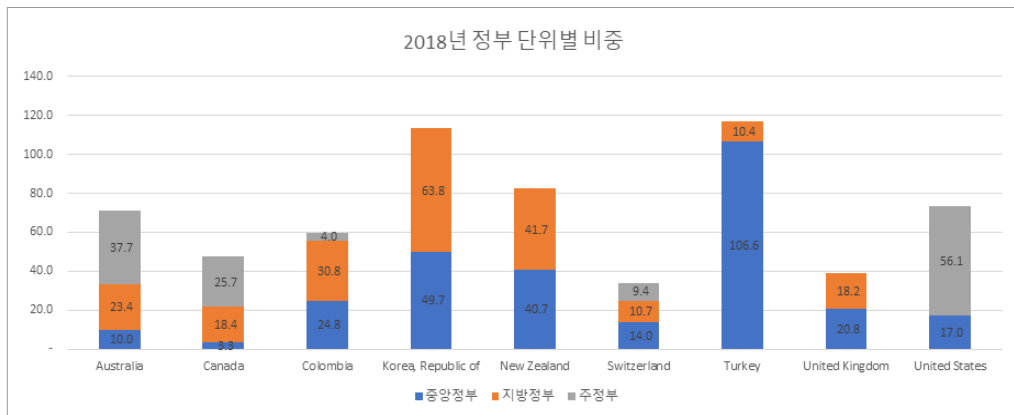
나. 비금융자산의 정부단위별 규모 추이

□ 일반정부의 전반적인 비금융자산 분석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단위별 비금융자산 규모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정부의 비금융자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호주, 캐나다, 스위스, 미국, 콜롬비아는 주정부 포함)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규모를 분석함

- 프랑스와 체코의 경우 일반정부 자산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총 9개 국가 분석)
- 2018년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비금융자산 정부단위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2018년 비금융자산의 정부 단위별 규모〉

(단위: GDP 대비 %)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주정부 포함)의 비금융자산이 더 큰 규모를 보이고 있음
- 다만, 터키 및 영국의 경우 비금융자산에서 중앙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더 큼을 알 수 있음

다. 국가별 비금융자산 분석

□ 비금융자산 데이터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분석 범위를 판단해 볼 필요 있음

- 생산자산의 경우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가치저장자산, 기타고정자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 비생산자산의 경우 토지, 무형자산, 지하자원자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상기 계정체계의 분류대로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의 세부내역이 존재하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영국 등 5개 국가이며, 이 중 IMF에 비금융자산 데이터가 가장 충실하게 보고되는 국가 중 하나인 호주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세부 데이터는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주정부 포함)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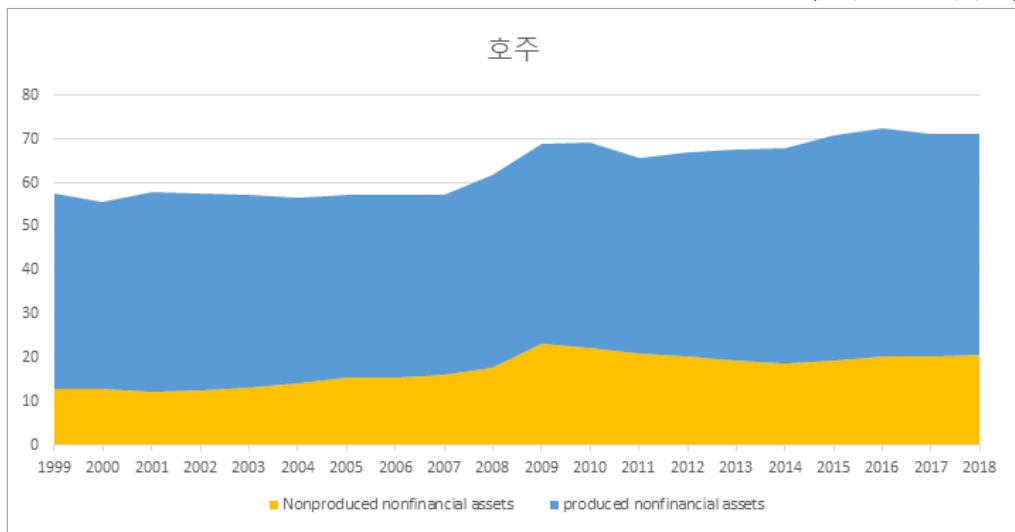
□ 호주(Australia) 비금융자산 세부 분석

1) 일반정부 분석

- 일반정부의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

〈일반정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 규모-호주〉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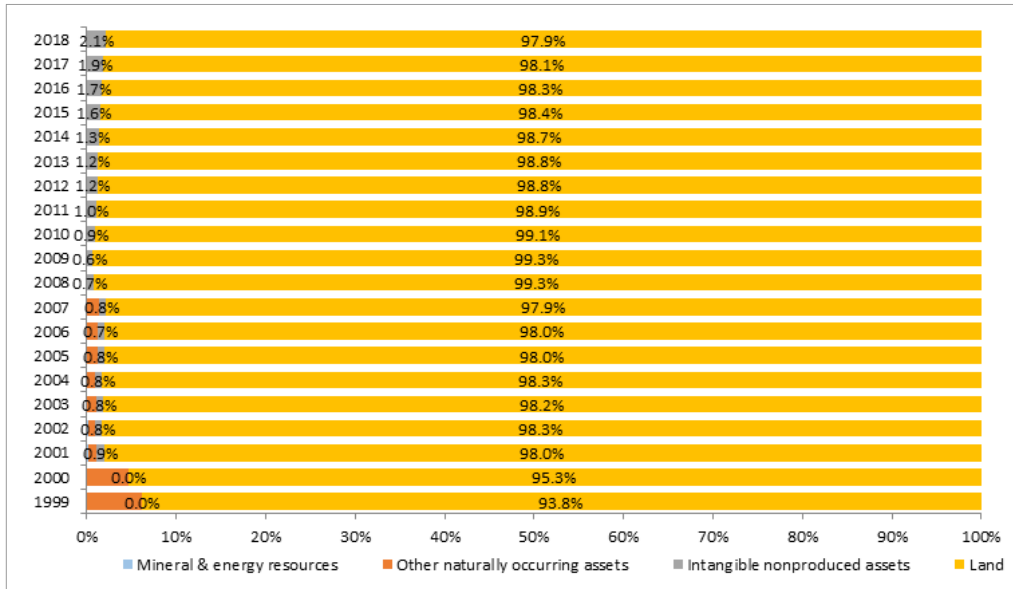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일반정부의 비금융자산에서 생산자산이 차지하는 규모가 더 큼을 알 수 있음. 일반정부 생산자산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1999년 GDP 대비 44.6%에서 2018년 50.5%로 5.9%p 증가하였음

- 일반정부의 비생산자산과 생산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반정부 비생산자산의 세부내역-호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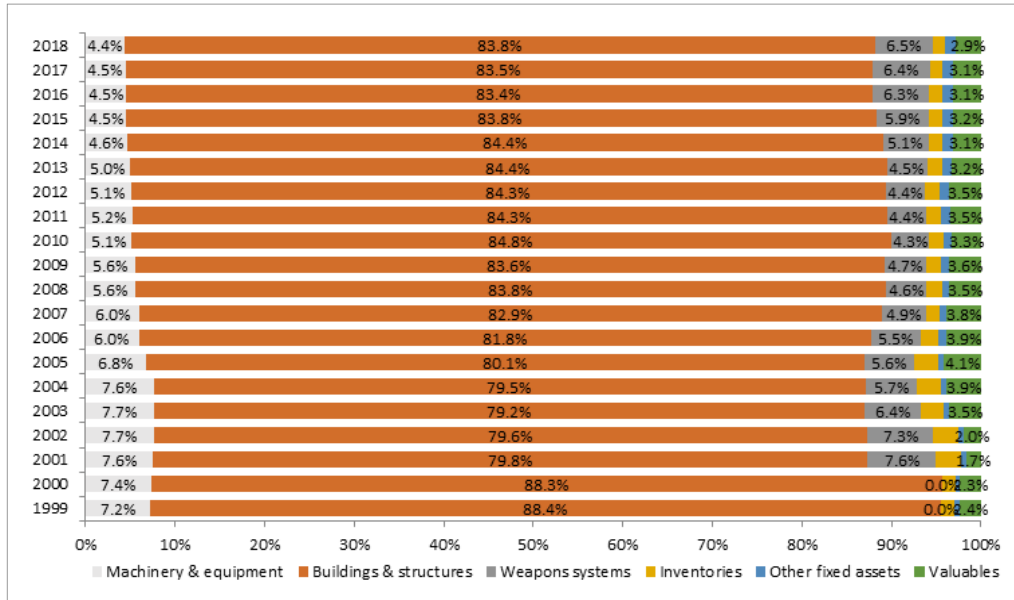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비생산자산의 대부분은 토지가 차지(93.8~99.3%)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무형비생산자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8년 기준 토지가 비생산자산의 97.9%, 무형자산이 2.1%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정부 생산자산의 세부내역-호주〉

(단위: %)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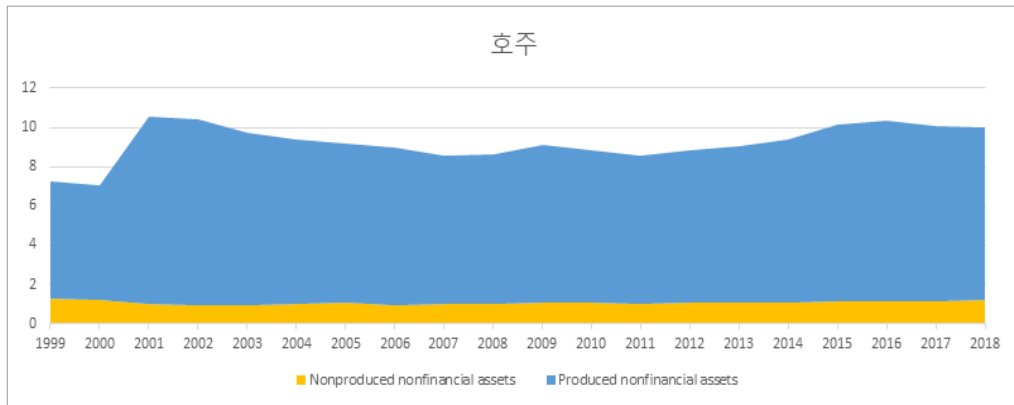
- 생산자산의 대부분은 건물및구축물이 차지(79.2~88.4%)하고 있으며, 2000년 대 초반부터 무기체계가 자산으로 집계되고 있음. 2018년 기준 건물및구축물이 생산자산의 83.8%, 무기체계가 6.5%, 기계장치가 4.4%를 차지하고 있음

2) 중앙정부 분석

- 중앙정부의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

〈중앙정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 규모-호주〉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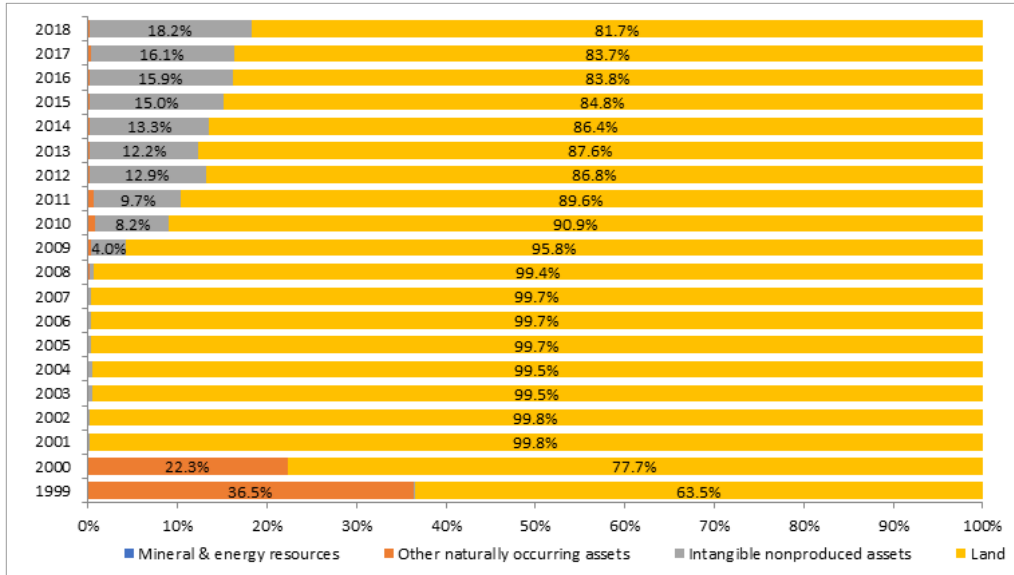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비금융자산에서 생산자산이 차지하는 규모가 더 높으며, 그 차이는 일반정부 분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중앙정부 비생산자산은 GDP 대비 1% 수준인 반면, 중앙정부 생산자산의 추이는 1999년 GDP 대비 5.9%에서 2018년 8.8%로 2.9% 증가함

- 비생산자산과 생산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중앙정부 비생산자산의 세부내역-호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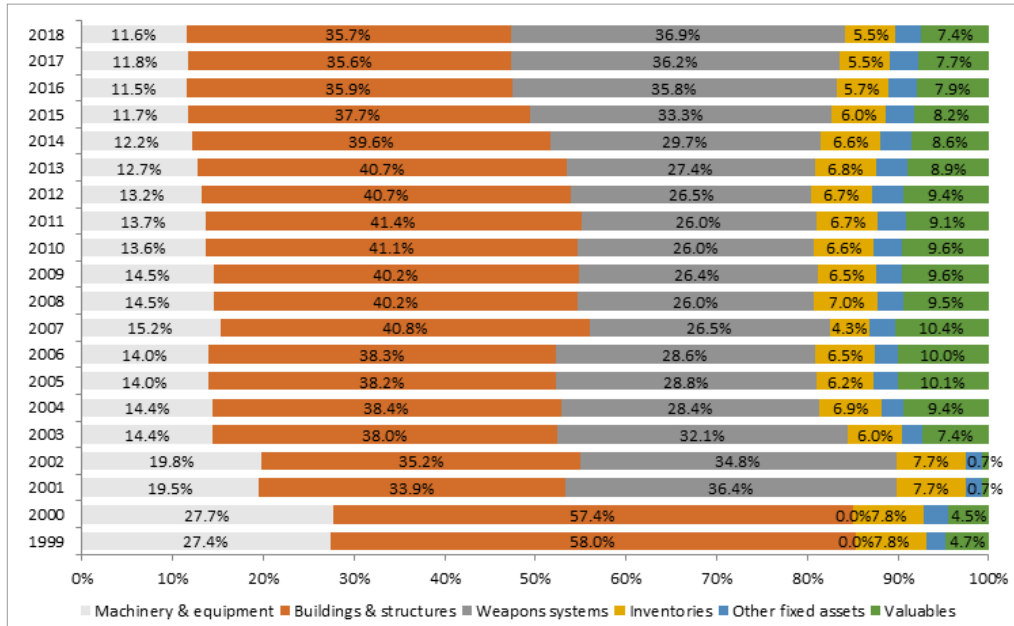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일반정부와 마찬가지로 비생산자산의 대부분은 토지(63.5~99.8%)가 차지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일반정부에 비해 적은 편임. 반면, 무형비생산자산의 규모가 일반정부 분석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18년 기준 토지가 비생산자산의 91.7%, 무형자산이 18.2%를 차지하고 있음

〈중앙정부 생산자산의 세부내역-호주〉

(단위: %)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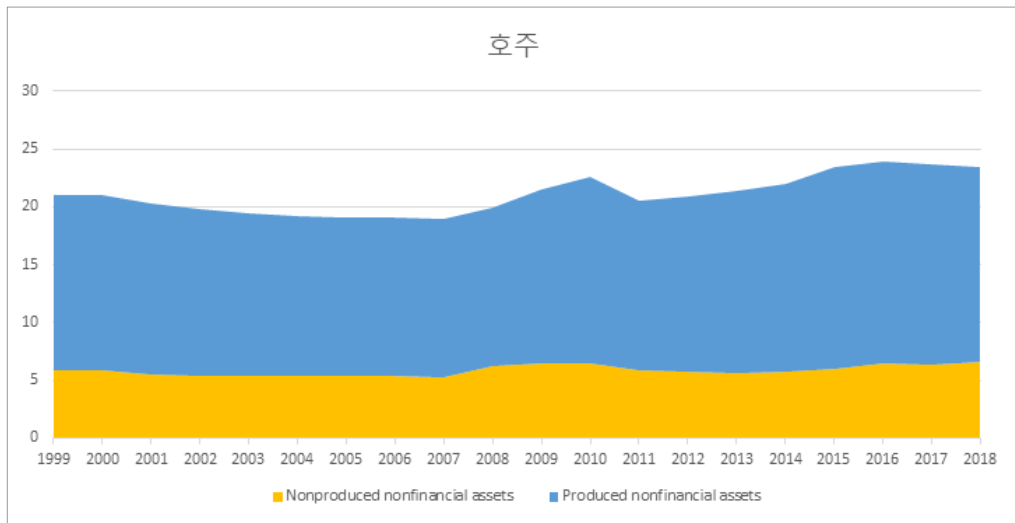
- 일반정부의 비생산자산 대부분은 건물및구축물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중앙정부 비생산자산은 건물및구축물(33.9~58.0%)의 규모가 줄어들고 무기체계, 기계장치, 가치저장자산 등이 일반정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기준 건물및구축물이 생산자산의 35.7%, 무기체계가 36.9%, 기계장치가 11.6%, 가치저장자산이 7.4%를 차지하고 있음

3) 지방정부 분석

- 지방정부의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

〈지방정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 규모-호주〉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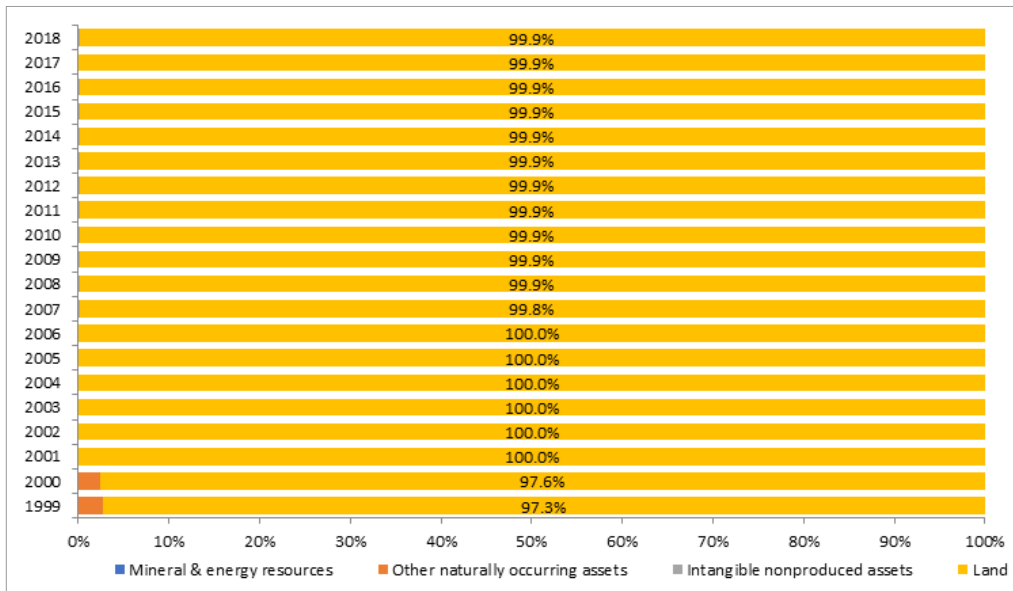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지방정부의 경우 비금융자산에서 생산자산이 차지하는 규모가 더 큼을 알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일반정부 분석과 비슷한 추이를 보임. 지방정부 비생산자산은 GDP 대비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생산자산의 추이는 1999년 GDP 대비 15.2%에서 2018년 16.8%로 1.6% 증가하였음

- 지방정부의 비생산자산과 생산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지방정부 비생산자산의 세부내역-호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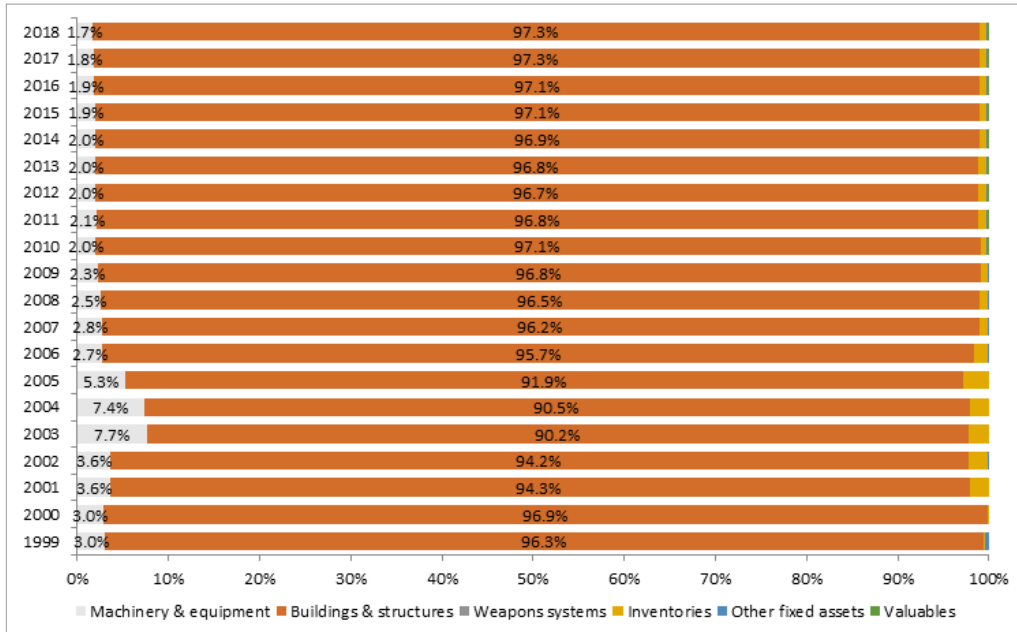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비생산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에 가까움

〈지방정부 생산자산의 세부내역-호주〉

(단위: %)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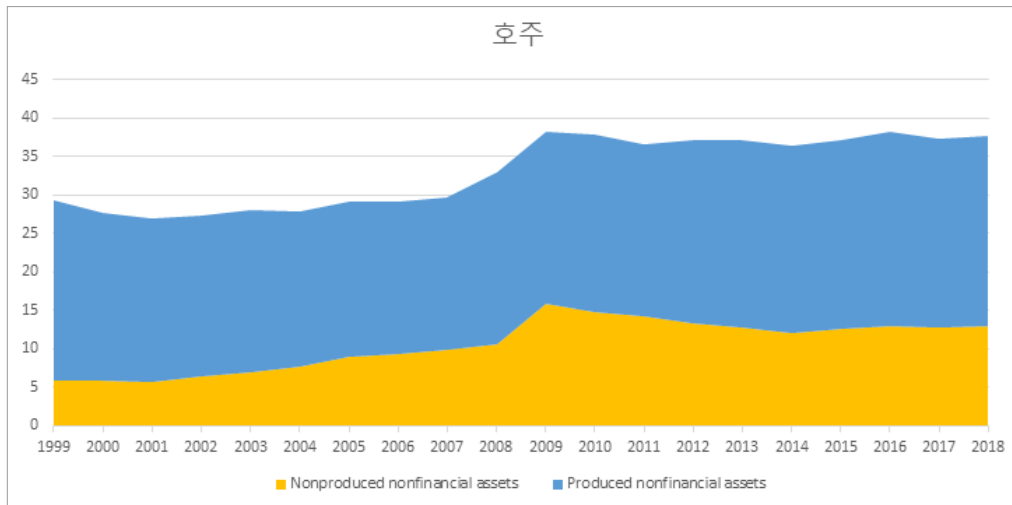
- 지방정부의 생산자산 대부분은 건물및구축물(90.2~97.3%)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기계장치가 일부를 차지, 그 이외의 자산은 비중이 거의 없음. 2018년 기준 건물및구축물이 생산자산의 97.3%, 기계장치가 1.7%를 차지하고 있음

4) 주정부 분석

- 주정부의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

〈주정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 규모-호주〉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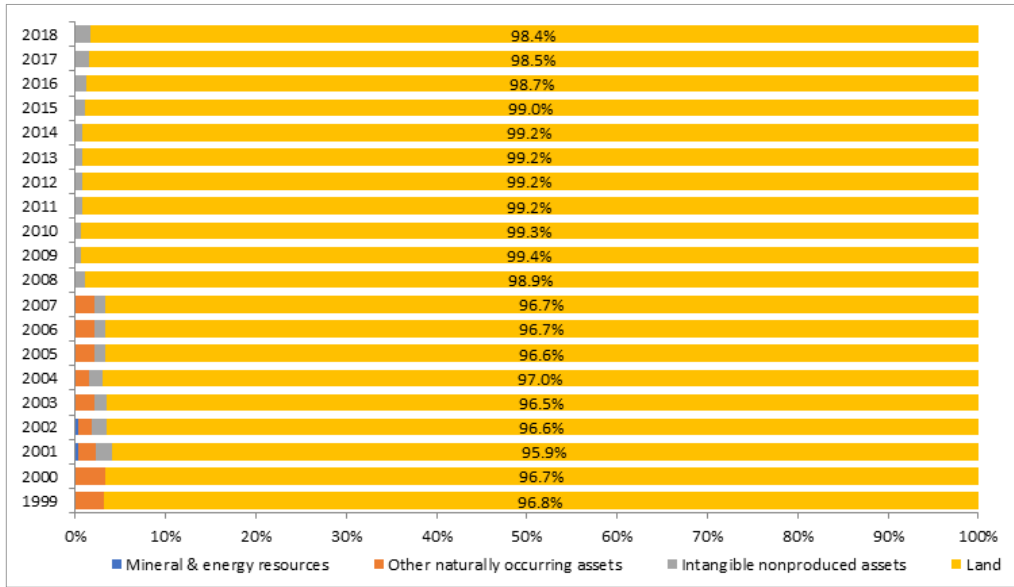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비금융자산에서 생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일반정부 분석과 비슷한 추세를 보임
- 주정부 비생산자산의 추이는 1999년 GDP 대비 5.8%에서 2018년 12.9%로 7.1% 증가하였음. 주정부 생산자산의 경우 1999년 GDP 대비 23.5%에서 2018년 24.8%로 1.3% 증가하였음

- 주정부의 비생산자산과 생산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정부 비생산자산의 세부내역-호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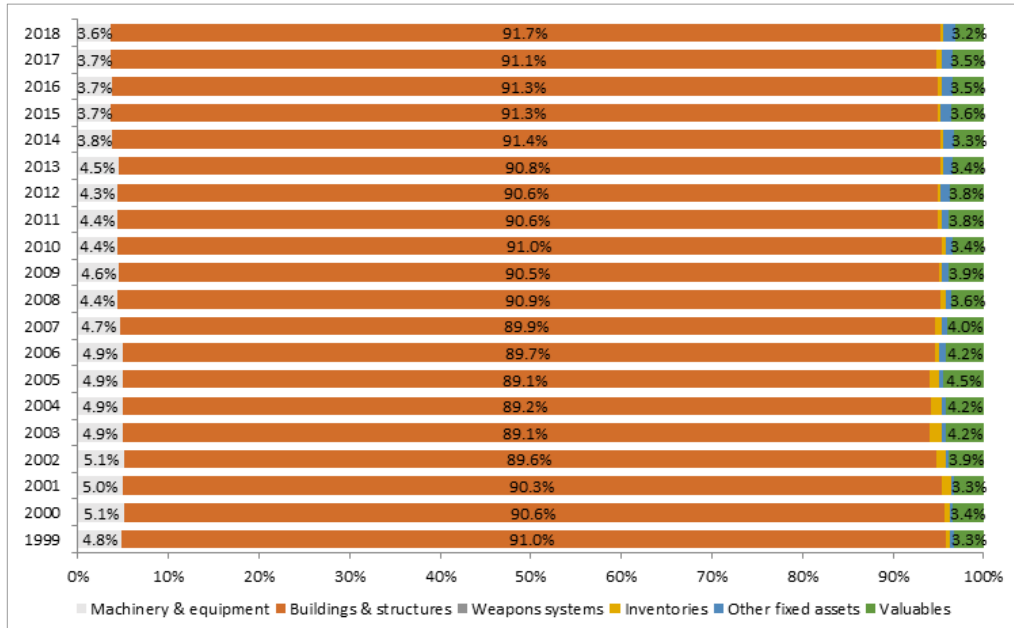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비생산자산에서 토지(95.9~99.4%)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무형자산과 자연발생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2018년 기준 토지가 비생산자산의 98.4%, 무형자산이 1.6%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정부 생산자산의 세부내역-호주〉

(단위: %)



출처: IMF data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가공하여 작성

- 주정부의 생산자산 대부분은 건물및구축물(89.1~91.7%)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기계장치와 가치저장자산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건물및구축물이 생산자산의 91.7%, 기계장치가 3.6%, 가치저장자산이 3.2%를 차지하고 있음

3 2020년 K-IFRS 기준서 제·개정

가. K-IFRS 기준서 제·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며, 회계사무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K-IFRS의 제·개정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에 영향을 미친다.

나. 2020년 주요 K-IFRS 기준서 제·개정 내용

기준서	제·개정 주요 내용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p>(개정 사유) 사업 여부 판단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 제공 목적</p> <p>* 투입물, 과정, 산출물</p> <p>(주요 내용) 투입물과 과정의 정의를 개정하고 산출물을 보다 좁게 정의함. 이에 따라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 산출물의 창출에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산출물에서 제외함. 과정이 실질적인지 판단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제공하였고, 취득한 대상이 '사업'인지 '개별 자산 취득'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적 집중 테스트를 신설함</p>
제1001호, 제1008호 중요성 정의	<p>(개정 사유) 기존 중요성의 개념은 유지하되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기준서 간, 기준서 내의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p> <p>(주요 내용) 중요성의 정의에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해가능성을 저하하지 말아야 함'을 포함하고, 이용자를 '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로 명시하였으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개정하여 임계치를 명확히 하였음</p> <p>☞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하고,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함</p>

기준서	제·개정 주요 내용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 개정	(개정 사유) 자산·부채의 정의, 인식, 측정을 개정하고, 보고기업, 제거, 표시와 공시 개념을 추가하는 등 전면 개정 (주요 내용) 측정, 표시와 공시에 대한 개념, 제거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고 자산과 부채의 정의 및 인식하기 위한 원칙을 개정함. 또한 신중성, 수탁책임, 측정의 불확실성, 실질의 우선에 대하여 명확히 함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추가	(개정 사유) 이자율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각국의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 (주요 내용)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함. 이에 따라 기존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예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 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보도자료, 2019. 12. 4.

다. 제·개정 K-IFRS 기준서 영향

2020년부터 적용하는 제·개정된 K-IFRS 기준서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된 K-IFRS가 적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주석에 개정효과와 관련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1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20년 12월 5일(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온라인 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본고는 학술대회에서 센터가 발표한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향후 개선방안의 발표 및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가. 주제발표 요약

1) 공익법인회계기준 한계점 및 개선방안

□ 기타 수익 비중의 과다

- 사업수익 구성 현황 분석 결과 매출액(34.6%)과 기타수익(36.3%) 비중이 높음
 - 매출액과 기타수익이 사업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부내역 파악이 어려움
- 매출액과 기타수익을 세분화하여 정보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비용의 성격별 구분 정보 제한적

- 사업비용을 분배, 인력, 시설,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는 쉬우나 세부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 분배, 인력, 시설, 기타 비용의 세분화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사업수행비용의 세부정보가 부족

- 사업수행비용의 세부사업별 구분 정보가 제한적
 - 세부사업별 구분된 정보를 통해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선택 규정에 그쳐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구분하지 않고 있음

-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표시하도록 세부 사업별 구분 표시를 필수항목으로 변경

□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보조금은 기부금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 보조금 회계처리 규정 신설이 필요
 - 적용 범위, 수익인식 시기, 반납 시 회계처리, 표시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범위 명확화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 변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2021년부터 제외)되면서 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2020년 결산공시부터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공시가 의무화되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함
 -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구분회계를 세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통합재무제표만 작성하도록 하는 등 더욱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이 필요함

2) 공익법인 공시 한계점 및 개선방안

- 재무정보 정합성 오류 →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뢰성 강화
 - 결산서류 공시서식 및 재무제표의 정보의 불일치, 재무상태표 대차 불일치, 계정과목 사용 오류 등의 문제점 발생
 - 결산서류 공시 작성 시스템의 자동검증기능을 개선하고 결산공시서식과 재무제표데이터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공익법인 결산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국세청의 모니터링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공익법인 재무제표의 국세청 공시
 -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국세청 공시양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단기적으로 별도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공익법인을 위한 별도 양식(예: 구분회계 없이 통합재무제표만 작성)을 마련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각 회계기준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나. 토론 요약

1) 박미희 (용인송담대학교)

-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논란 등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문제 대두
 - 공익법인 간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제고, 회계투명성 강화, 기부금 내역 보고 등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이 필요
 - 또한, 공익법인 공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가 필요
 - 이를 위해 별도의 공익법인 전자공시시스템 마련 및 공익법인을 위한 표준 회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2)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본 연구는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 다만, 현행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결산시스템 공시(2007년부터 개시)는 세금징수 등 세무목적으로만 활용되는 한계가 있음
 - 향후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공시에서 기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적 관점의 재무보고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1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 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이 은 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본 오피니언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전체 부처의 오류 총액을 집계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 이은경,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 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2020, pp. 163~186.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5988>

가. 서론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자로 「국가회계법」을 시행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국가의 총자산, 부채규모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11회계연도에 국가 재무제표(재정상태표)를 통하여 최초로 공식 집계된 국가의 총자산은 1,525조원이며, 부채는 773조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52조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무제표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산, 부채, 순자산, 프로그램원가 등의 회계정보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 공시했던 재무정보에 오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재무제표에 보고되면 회계정보의 신뢰성 등이 훼손되어 회계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세, 부담금 등의 조세를 통하여 징수하거나 보유하던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하거나, 채권(국채)을 발행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재정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국가 재무제표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서 국가 재무제표가 국민, 국회는 물론 정책사업 집행자 등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총 9회에 걸친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재무제표의 오류 총액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오류액 상위 4개 부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국가 재무제표 오류 총액 분석 결과

국가 재무제표의 오류금액은 감사원 수정금액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구성된다. 감사원 수정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결산 검사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한 오류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재무제표가 확정된 것을 의미하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화를 수반한 것을 의미한다.

2011~2019년 동안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합계액은 총 200.1조원이며, 총 9회의 결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매년 평균적으로 22.2조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오류수정액이 일정한 추세(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 수정사항은 2011~2019년 동안 총 118.7조원 발생하였으며,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하다 2016년에 다시 2014년보다 많은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4.2조원, 16.5조원의 오류수정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1~2019년 동안 81.4조원 발생하였고,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이던 수치는 2014년에 13.6조원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되다가 2017년에 15.9조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또한, 2019년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6.9조원인데, 이는 최저치인 4.4조원보다 여전히 높다.

〈표 1〉 최초 재무제표 개시 이후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감사원 수정사항	18.6	18.5	15.4	11.9	7.0	12.5	4.1	14.2	16.5	118.7
전기오류수정 손익	0	12.6	4.4	13.6	11.9	7.3	15.9	8.8	6.9	81.4
합 계	18.6	31.1	19.8	25.5	18.9	19.8	20.0	23.0	23.4	200.1

출처: 중앙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편, 국가 재무제표 오류 총액 상위 4개 부처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이며, 오류발생 원인은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의 오류, 사실의 누락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주요 오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오류수정 유형 및 사례

구분	오류 사례
추정의 오류	- 대손충당금 과소 추정 - 소송충당부채
계정분류의 오류	- 건설증인자산 본계정 대체 - 자본적 지출(자산) 인식
계산의 오류	- 토지 면적 오류에 따른 재평가 오류 - 자산가액 입력 오류
사실의 누락 등	- 토지의 재평가 누락 - 토지 및 건물가액 오류 - 토지 등의 이중등재 - 건설증인자산 누락 - 사회기반시설(고속국도, 공항, 국도, 철도 등) 누락

출처: 중앙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오류가 주로 발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 부처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총자산 중에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65.3%이며, 국방부의 경우에는 총자산 220.9조원 중 210.6조원(95.3%)이 일반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6.7조원)과 사회기반시설(21조원)이 총자산 31조원 중 8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4개 부처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자산 중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정성이 강조되는 부처라고 할 수 있다.

〈표 3〉 2019년 말 현재 오류 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일반유형자산(a)	사회기반시설(b)	총자산(c)	비중(a+b)/c
국토교통부	131.1	306.3	669.4	65.3
국방부	210.6	0.0	220.9	95.3
농림축산식품부	44.7	0.0	64.3	69.5
해양수산부	6.7	21.0	31.0	89.4

주: 내부거래 전 금액임

출처: 각 부처의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기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하고, 둘째, 감사원의 회계결산 감사의 정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무제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증가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결론

본고는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결산검사로 인한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 손익을 합한 오류 총액을 최초로 집계하고, 오류금액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국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정확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가 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06

센터동향

1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정보공시 개선 연구」 위탁과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위탁과제로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정보공시 개선 연구」를 남혜정(동국대), 이아영(강원대), 김동수(삼일회계법인), 강홍석(삼일회계법인)과 수행하였다(2020.10.5.~12.31, 3개월간). 센터는 2020년 11월 27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외부토론자로 기획재정부 이남희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이어서 2020년 12월 5일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외부토론자로 경희대학교 최연식 교수, 한길회계법인 김상노 회계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정보공시 개선을 위해 수행된 연구로, 국가 장·단기투자증권의 현황 파악, 국내·외 장·단기투자증권의 공시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정보생산자·정보이용자·감독기관의 심층인터뷰(FGI)를 통해 현행 공시정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표준 주식공시(안)를 제시하였다.

가. 연구 발표요약

□ 국가 장·단기투자증권의 현황

국가재무제표에서 장·단기투자증권은 총자산의 약 39%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단기투자증권 보유금액이 가장 높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공시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가재무제표에서는 장·단기투자증권을 대분류 차원으로 분류하여 해당 공시 내용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중앙부처 내 어떤 개별 회계실체가 장·단기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해외 주요국 사례 및 민간사례 현황

해외 발생주의 국가의 사례 확인 결과, 높은 수준의 주식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지분증권을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공정가치, 총투자금, 누적 평균손익금액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캐나다는 캐나다 크라운 기업과 기타 정부기업에 투자 잔액과 요약 재정상태표를 함께 표기한다. 뉴질랜드는 정부 보고 대상 법인들의 추정(예산), 요약 재무정보를 공시한다. 영국은 통합재정보고서에서 수준3 공정가치 정보에 대해 서술형 부연 설명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보완한다. 호주는 수준3 금액의 변동을 표로 제공하고, 각주에서 가장 큰 변동 금액을 서술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보완한다.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K-IFRS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요약 재무정보를 공시하여 정보이용자들이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심층인터뷰(FGI) 분석 결과

현행 정보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정보생산자와 정보이용자 및 감독기관 모두 현행 공시 정보가 불충분하며,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상세내역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업무 관련 사항 질문에 대해 정보생산자는 공시기한 차이로 정보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보이용자 및 감독기관은 결산보고서의 주식항목 확대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였다. 추가 공시사항 질문에 정보생산자는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 여부에 부정적이었으나, 정보이용자 및 감독기관은 긍정적이었다. 또한 정보생산자는 국민연금운용자산 분리 공시에 부정적이었으나, 정보이용자 및 감독기관은 긍정적이었다. 정보생산자와 정보이용자 및 감독기관 모두 투자유가증권을 투자목적별로 분리 공시하고, 투자유가증권 공정가치 정보의 주식 공시가 유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나. 중간보고 토론내용 요약

(김완희) 내·외부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무엇인지, 그 요구에 어떻게,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미흡점을 정리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가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정보 외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결산보고서상 링크를 기재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남희) 많은 정보 공시를 통한 투명성 개선 못지않게 그에 따르는 비용을 감안하여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시정보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문창오) 정보의 효익 측면에서 충분성과 이해가능성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이용자 측면에서는 국민·국회·연구자 중 어느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주식 작성 시 개별 부처 및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제출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출하기 어려울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한소영)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관련된 현행 공시 정보가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최초로 공시한 때보다 현시점에 장·단기투자증권의 정보 공시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이 중요하며, 부처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에 포함될 주식 수준에는 차이를 두는 것을 제안한다.

다. 최종보고 토론내용 요약

2020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종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중간보고에서 제시하지 못한 표준 주식(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다.

(김상노) 현행 국가 재무제표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목적인 ‘회계책임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단기투자증권의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기타지분증권, 투자감액손실, 중요 출자 등에 대한 불명확한 분류와 충분하지 않은 공시는 개선이 필요하다.

(최연식) 국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역시 중·장기적으로 형태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보유 목적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며, 회계 책임성 강화와 공시의 완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투자증권은 투자목적과 정책목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형 설명을 강화하고 유의한 지배력을 갖는 경우 연결 또는 지분법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 발표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뉴스레터의 ‘8. 세미나_2. 2020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보고’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제1차 및 제2차 「공공회계 포럼」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공공회계부문의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방회계통계센터와 공동으로 「공공회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19년에도 지방회계통계센터, 감사연구원와 함께 「공공회계 연구네트워크」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 연장선으로 올해부터는 명칭을 「공공회계 포럼」으로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공공회계 포럼」의 외부 전문가로 전 홍익대학교 김경호 교수, 경북대학교 권선국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 교수, 서울대학교 김봉환 교수가 참여한다.

현재까지 「공공회계 포럼」은 총 두 차례 개최하였다. 제1차 「공공회계 포럼」은 2020년 10월 16일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센터의 임정혁 회계사가 'IPSASB 공개초안(ED) 70, 71, 72의 적용 범위 및 주요 규정'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국제회계의 변화 방향을 공유하고 IPSASB로의 의견 제출 시 지방정부 입장까지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의견을 주로 수렴하였다. 제2차 「공공회계 포럼」은 2020년 11월 24일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고, 이정회계법인 허용 회계사가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활용한 지방재정정책 추진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 제1차 「공공회계 포럼」 결과 요약

첫째, 지방회계기준 제정자 입장에서 IPSAS 공개초안(ED) 72의 적용 대상 거래 중 수행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의 인식 및 측정 원칙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이 존재한다. 수익·비용 프로젝트의 취지에 동의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으나, 실무 적용상 문제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보조금 등 이전비용 거래의 전달 경로 길이와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도정부→시·군·구'의 경로로 전달되는 반면, 성인문예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공공기관→시·군·구'의 경

로 전달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정산 등 수행의무가 이행된 정도를 신뢰성 있게 파악하기 위한 과정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통상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시기보다 보조금의 정산시기가 늦고 지방정부의 유형별로 운용 중인 시스템이 다양함에 따라 이전비용 인식을 위한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민간 보조금의 경우 최근 개선된 'e-나라도움'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출연금, 보조금 등 형태로 구분되고 있는 이전비용의 경우 수행의무, 현재의무를 고려하여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현재 철도공사를 의무로 하는 출연금 지급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가회계상 수행의무가 있는 형태의 출연금 회계처리에 대한 쟁점이 해결될 수 있다.

나. 제2차 「공공회계 포럼」 결과 요약

□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활용한 지방재정정책 추진방안 연구' 주요 발표 내용

(허웅) 현재 지방회계의 재무지표는 기업회계 관점에서 개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성과지표는 투입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측정하는 효과성 지표이기 때문에 재무정보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무지표 및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30개에 달하는 재무지표를 간략하게 하고, 중점지표를 중심으로 산출이 쉽고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재무지표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시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성 지표로 변환함으로써 효율성 평가, 표준화 및 예산편성 추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활용한 지방재정정책 추진방안 연구' 주요 토론 내용

(김경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채는 주로 사업자금 조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부채비율과 같은 투자자본의 구성에 관한 재무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권선국) 현행 재무지표의 수가 너무 많고, 회계지식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기에는 산출식이 복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원석)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관계로 인해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활용할 유인이 크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교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의 표준화를 시도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김봉환)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에 앞서 재무보고의 단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재무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개선된 재정지표의 수가 여전히 많은데, 10개 미만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문창오) 현재 중앙정부 결산서에는 회계책임 및 정책집행 분야 지표는 산출하지 않으므로 향후 중앙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판단된다. 반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지표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수가 많고 중복되는 요소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한소영) 국가회계의 경우 2017년 재정성과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재무지표가 개발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활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지표 개발 시 지표에 관한 단순 수치 제시보다 그 해석과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양영철) 지표를 좋게 보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위적으로 회계처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순화할 수 있는 지표와 세분화해야 하는 지표를 구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선사항은 내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정규) 정책집행 관련 지표의 경우 일부 분야를 통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 받아들이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분야 수준의 비율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계형) 실효성 있는 지표의 개수를 늘리는 것 또한 정보이용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재무지표의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용한 시사점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3 제3차 「발생주의 재무정보 연구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 결과 및 연구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회는 센터 주관으로 운영되며, 한국재정정보원과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센터는 지난 7월 제1차 연구회와 9월 2차 연구회에 이어, 2020년 10월 26일에 제3차 연구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재정성과평가센터의 박노옥 박사, 한국재정정보원의 박정수 박사가 각각 「프로그램 선정,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방안 및 사례」,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외부토론자로 김봉환 교수, 성시경 교수, 유승원 교수와 한국재정정보원 정성호 박사가 참여하였으며, 센터에서는 김완희 소장, 문창오 부소장, 한소영 팀장 등이 참석하여 연구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 발표내용 요약

- (발표 1) 프로그램 선정,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방안 및 사례
(박노옥, 재정성과평가센터)

현행 성과평가체계는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부재’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특히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포괄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율적인 성과평가로 인해 부처의 재량이 증가하고 중앙관서의 대처 역량이 하락한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 체계를 개편할 예정

이다. 성과관리의 단위는 프로그램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동시에, 재정 당국의 주도로 내역사업·세부사업에 대한 핵심평가를 통해 세부사업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 (발표 2)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 (박정수, 한국재정정보원)

현재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내에 성과관리 모듈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형태의 정보공개로 인하여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으며, 디브레인 성과관리시스템 DB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없어 품질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재정 당국과 일반 국민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디브레인이 정보 총괄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탑재하고 분산된 재정성과정보를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 토론내용 요약

(김봉환) 성과관리 설정 원칙 중 포괄성의 경우, 구체성과 성격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며, 포괄적인 지표로는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에서 지표를 올리기가 쉬운 일부 사업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노욱) 프로그램 성과지표 개편 전에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이질적인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재배치를 고려하는 등 단점을 상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성시경) 국민체감형 프로그램 재구성 및 성과지표를 도입한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평가 위주의 성과관리라는 인식과 실무부처의 성과평가에 대한 부담이 성과관리 개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유승원) 프로그램 예산체계 내에서 재정 당국 주도의 성과평가를 시행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그 외의 부처 간 역할 배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성호) 현행 성과관리체계는 사업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위주의 성과관리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산체계 구조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과관리 기본법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며,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따른 성과관리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김완희) 성과평가체계는 내·외부적으로 매우 관심 있는 주제로, 이번 발표는 예산체계 개편 및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과목표관리 개편까지 진행되고 있는 규모 있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향후 연구회를 통해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꾸준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

4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12월 23일에 센터의 2020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환류하고자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체평가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재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세환 상임위원(한국회계기준원), 지현미 교수(계명대학교),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와 내부위원인 박노옥 선임연구위원(재정성과평가센터)이 참석하여 위원별로 개별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는 2020년 사업실적에 대해 'I. 계획, II. 사업집행, III. 환류 및 사업개선'으로 구분하여 이뤄졌다. 평가 결과, 96.8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센터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협력 부처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연계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불어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세부 항목별로 반영했는지의 여부 및 그 근거를 제시할 것과 향후 학계에서 국가회계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더욱 장려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회계교육 사업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국가회계교육의 만족도 하락과 교육이수자의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며 IPSASB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위해 향후 의견 조희기관과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센터의 예비 의견을 더 이른 시기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2021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차년도 자체평가를 위한 센터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5 202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10일(목) 기획재정부 5층 중회의실에서 실시간 영상 강의로 회계 및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를 활용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결산교육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127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1개)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에서는 최지영 회계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개요 및 절차, 2019회계연도 결산서 검토 결과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방민식 회계사의 K-IFRS 제·개정 사항, 주요 회계처리 및 주식 작성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이뤄졌으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댓글을 활용한 질의·응답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0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교육(12.10), 기획재정부 중회의실〉

6 「순채무 도입을 위한 금융자산 분류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제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과제인 「순채무 도입을 위한 금융자산 분류방안 연구」를 완료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과제는 현행 국가채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순채무 산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금액 산출에 필요한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여러 방안을 연구하였다. 국가채무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응자산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이 부재하고 국제통계지침에 따른 산출방식이 아님에 따라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순채무 산출을 위한 금융자산의 범위를 포괄범위별, 자산종류별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검토하고, 최종 선정된 방식의 9개년의 시계열을 시범 작성하였다.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순채무 도입 여부 및 재정건전성 지표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보인다.

1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가. 개요

- 주 제: 공적연금 회계의 국가별 현황 및 쟁점: 한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 일 시: 2020.11.3.(화) 14:00~16:30
- 장 소: 서울 더 플라자 호텔, 4층 오크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 참가자 및 해외 발표자는 웹심포지엄으로 실시간 동시 진행

〈주제발표 및 토론〉

[기조발표]

- OECD 국가의 공무원 연금회계처리 다양성(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국가별 발표]

- 스위스의 공적연금 회계(Andreas Bergmann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교수)
- 프랑스의 공적연금 회계(Fabienne Colignon 프랑스 국가회계기준위원회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 일본의 공적연금 회계(Ryota Kaneko 일본 국학원대학 교수)
- 한국의 공적연금 회계(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좌담회]

- 유용한 연금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논의
 - 좌장: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 패널: Ross Smith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국장, 백승무 공무원연금공단 차장, 국가별 발표자 4명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11월 3일(화)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공적연금 회계의 국가별 현황 및 쟁점: 한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심포지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부처, 국회, 학계, 유관기관, 회계전문가 등 국내 인사는 물론 IPSASB, OECD 관계자, 필리핀 감사원 등 해외 인사 총 102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이호동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의 축사로 개회하였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간의 업무협약 체결식(MOU)이 온라인으로 체결되었다. 이어 기조발표와 프랑스, 스위스, 일본, 한국의 국가별 발표, 좌담회로 진행되었다.



〈환영사 및 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업무협약체결식〉

기조 발표에서는 김완희 센터 소장이 OECD 국가의 공적연금 회계처리의 다양성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재무제표 본문표시, 주식표시, 미인식 국가들을 소개하고, 발표사례로 선정된 4개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국가별 발표는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Andreas Bergmann 교수, 프랑스 국가회계기준위원회 Fabienne Colignon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일본 국학원대학 Ryota Kaneko 교수,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봉환 교수가 각국의 연금제도 및 회계처리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좌담회는 중앙대 교수이자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IPSASB) 위원인 정도진 교수의 진행으로 Ross Smith IPSASB 국장, 백승무 공무원연금공단 차장, 발표자 전원이 참여하였다. 좌담회를 통해 유용한 연금회계정보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정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연금제도와 공적연금에서의 할인율 이슈, 교환 및 비교환 거래가 섞여 있는 연금제도의 부채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새로운 연구과제도 제안되었다.

센터는 공공재정관리 및 공공회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확산하기 위해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웹심포지엄 영상은 다음에 제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Youtube 채널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막식: <https://www.youtube.com/watch?v=4ld7FvCBZqA>
- 기조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Qz-rsV6vudo>
- 국가별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xAcPuz0zZI8>
- 좌담회: <https://www.youtube.com/watch?v=tVyq9YfjfG8>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기조발표] OECD 국가의 공무원 연금회계처리 다양성

Diversity of Public Officials Pension Accounting among OECD Countries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김완희 소장은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국가와 미인식하는 국가 등 OECD 국가의 다양한 공적연금 회계처리를 소개함

- 한국 공적연금 현황은 공무원·군인연금만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9 회계연도 기준 공무원 758.4조원, 군인 185.8조원으로 총 944.2조원에 해당
- OECD 국가 중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인식 국가는 미국,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13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IPSAS 또는 IFRS의 종업원급여와 유사한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총부채 대비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 아이슬란드, 영국 등이며, GDP 대비로는 영국, 이스라엘, 한국, 미국 순으로 큼
- OECD 국가 중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미인식 국가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15개국으로 연금충당부채를 미산출하며, 프랑스는 연금정보를 주석 공시, 일본은 연금적립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등 다양성이 두드러짐
- 연금회계처리 다양성을 대표하는 4개국의 사례 선정 및 발표
 - 재무제표 인식 국가: 한국, 스위스
 - 재무제표 미인식 & 주석 공시 국가: 프랑스
 - 재무제표 미인식 국가: 일본



〈기조발표〉

[국가별 발표①] 스위스의 공적연금 회계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Switzerland

□ 스위스는 공적연금을 종업원급여와 사회보장제도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연금의 성격별로 상이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발표자: Andreas Bergmann)

- 스위스 연금제도의 개요
 - 스위스 공적연금제도는 1층 노령 및 유족보험, 2층 직업적 혜택제도, 3층 개인 연금의 세 개 층으로 구분
 - 1층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기본 연금, 2층은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에 관계 없이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 대상, 3층은 세제혜택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
- 스위스 연금제도의 회계처리
 - (1층) 향후 IPSAS 42(사회보장급여) 적용
2020년까지 현금주의로 작성, 2021년부터는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기타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채로 인식하며 금융상품 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평가
 - (2층) 고용주체에 따라 상이한 회계기준 적용
이 중 연방정부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위험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IPSAS 39(종업원급여)에 따라 부채를 인식

〈스위스 연금제도의 개요〉

		스위스 공적연금 제도		민간연금
		1층 기초연금보험	2층 직업해택제도	3층 개별보험제도
피고부	일반	의무 제1조 노령 및 유족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10) 노령 및 유족연금	의무 (필수) 제2조 퇴직,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40) 스위스연방연금기금	자발적 제82조 퇴직,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40) 금융부문(은행 및 보험회사) 내 다른 기관
	부부	의무 제1조 노령 및 유족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10) 노령 및 유족연금	의무 (필수) 제2조 퇴직,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40) 공적 및 사적 보험기관	
	민간	의무 제1조 노령 및 유족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10) 노령 및 유족연금	의무 (필수) 제2조 퇴직,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연방법 (831.40) 보험기관	

출처: ZHAW, 「Research note on the Swiss public pension system and its treatment in public sector accounting」, 2019.

[국가별 발표②] 프랑스의 공적연금 회계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France

□ 프랑스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의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으로 보아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발표자: Fabienne Colignon)

- 프랑스 연금제도의 개요
 - 프랑스 공적연금제도는 연금개혁법에 따라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을 선택하였음을 분명히 명시

- 중앙정부는 공무원과 국가회계실체가 고용계약이 아닌 법에 명시된 관계에 기반하며, 민간부문과 달리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 및 운영

* 재배분 메커니즘(répartition mechanism)이란 부과방식 (pay as you go)과 같은 재무적 도구를 이용하여 세대 간 연대정책을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함

• 프랑스 연금제도의 회계처리

- 사회보장 하위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정치적 관점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연방정부 재무제표 작성 범위에서 제외
- 즉, 연금제도는 권리·의무를 공유하는 법적 실체를 통해 운영되며, 재배분 메커니즘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이후의 연금지급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부채 미인식

• 프랑스 연금제도의 쟁점

- 프랑스는 연금제도가 불평등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 이러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보편적 제도 채택을 위한 법 제정 중

〈프랑스 연금제도의 개요〉

제도의 유형		6유형의 공무원연금 운영 관리자										제도의 유형	
		공무원부기연금 (3억 €)										보통 제도	
보충적 제도	독립적 보충적 제도	관리직보충연금제도총연합(250억 €)		비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510억 €)		국가 및 지방계약 공무원보충연금 기금 (30억 €)	공무원부기연금 (3억 €)		국가산업시설노동자연금기금 (20억 €)	그 외 특수한 제도 철도청 퇴직 예비금, 파리 교통공사 직원 연금기금, 등 (150억 €)	보충 제도		
	보조적 연금 제도 (7억 €)												
기초제도	지역일자 노령보험 전국공단, 자유직업 노령보험 국가기금, 프랑스 변호사 기금 등 (90억 €)	농업 사회경제 경영인 (80억 €)	농업 사회경제 노동자 (60억 €)	국가노후보험기금 (일반제도) (1,130억 €)				국가공무원과 군인을 위한 연금기금 (520억 €)	지방공무원 연금기금 (180억 €)				
											완성된 제도		
피보험자	비농업 노동자 및 자유업종 종사자	농업 경영인	농업 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행정 및 군 공무원	지방공무원, 의료공무원, 관계자	국가 노동자	특수한 제도의 직원		피보험자	
고용주			민간 농업 기업	민간부문: 상업, 산업, BTP, 용역		공법상 계약	중앙정부	공공기관	중앙정부	프랑스 철도노조, 파리 교통공사 등		고용주	

출처: 프랑스 정부, 「Report on Retirement Pensions of the Public Service」, 2020.

[국가별 발표③] 일본의 공적연금 회계

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Japan

□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이 후생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연금적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적연금예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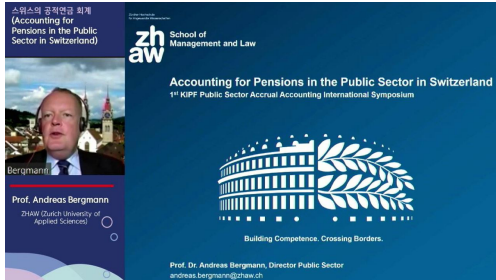
(발표자: Ryota Kaneko)

- 일본 연금제도의 개요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후생연금의 두 개 층으로 구분
 - 과거에는 공무원만 가입하는 공무원연금이 따로 존재하였으나, 연금개혁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통합
 - 연금지급은 현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수급자에 대한 연금급여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을 적용
- 일본 연금제도의 현황
 - 일본의 연금급여는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으로 연금급여가 고갈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완전고용, 여성 근로자 수 증가, 높은 투자 수익률 달성 등으로 긍정적 요인도 존재
 -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거시경제슬라이드를 도입하여 연금급여 지급 수준 조절
- 일본 연금제도의 회계처리
 - 연금적립금 운용은 연금특별회계가 수행하고 있으며, 연금적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적연금예치금으로 부채로 계상
- 일본 연금제도의 쟁점
 - 연금회계정보가 향후 연금개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필요

[국가별 발표④] 한국의 공적연금 회계(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현황 및 개선과제)
Current Status of Future Tasks of Public Officials Pension in Korea

□ 한국의 공무원·군인연금은 교환/비교환거래가 혼합된 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환거래를 포함한 부채인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발표함(발표자: 김봉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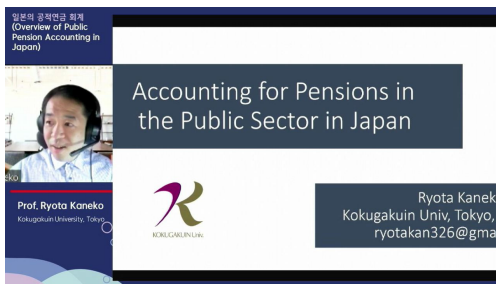
- 한국 연금제도의 개요
 - 한국 공적연금제도는 0층 저소득층 대상의 기초연금과, 1~2층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 3층 개인연금의 네 개 층으로 구분
 - 특수직역연금에는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포함하며, 매월 기준 소득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
 -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재원 부족분에 대해 국가가 보전의무를 지고 있음
 - 2015년에는 기여율 인상, 지급률 인하 등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
- 한국 연금제도의 회계처리
 - 한국은 「연금 회계처리지침」상 공무원연금을 교환거래로 간주하여,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
 - 연금충당부채는 예측급여채무(PBO)를 기반으로 측정하며, 2019년 기준 944.2조원으로 재무제표상 부채의 절반을 차지
- 한국 연금제도의 쟁점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금충당부채를 통해 재정건전성 평가에 대한 우려
 - 비교환거래 성격도 포함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지방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 인식으로 인한 작성 범위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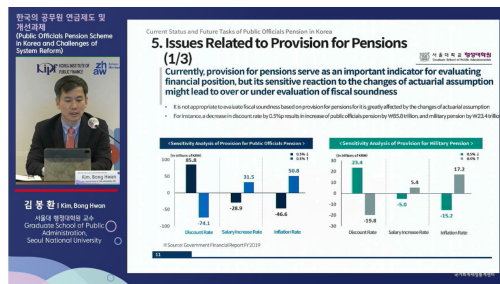
<스위스>



<프랑스>



<일본>



<한국>

[좌담회] 유용한 연금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논의
Discussion on Producing Useful Pension Accounting Information

□ (Fabienne Colignon 시니어 매니저) 공적연금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미래지급 정보를 주석 공시 등을 통해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프랑스는 연간 의결된 지출액과 해당 기관의 연금지급을 위한 기여금 수준을 파악하며, 권리·의무를 인식한다는 관점에 따라 중앙정부가 미래연금지급을 위한 현재의무를 책임지지 않음
- 현재 프랑스의 연금 관련 쟁점은 공적연금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지급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주석정보를 개선할 수 있는냐에 초점이 있음

(좌장) 회계정보에 있어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란 생각에 동의하며, 프랑스 사례를 통해 연금제도는 배경과 사회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함

□ (Andreas Bergmann 교수) 재무제표에 연금부채를 인식함으로써 국민에게 경제적 실질을 보여줄 수 있음을 논의

- 스위스가 연금 부채를 주식에서 재무제표로 변경한 이유는 바로 스위스의 모든 연금이 하이브리드 연금(위험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임
- 다만, IPSAS 42는 부채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계상이 가능하며, 연금제도들마다 다른 자격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부채가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음

(좌장) 법 제정자가 연금제도 제정 시 회계에 대한 고민을 선 이행하지 않고 이루어져 연금종류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Ryota Kaneko 교수) 정책입안자가 발생주의 연금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체계 신설,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도입 등의 제고 필요

- 일본은 2015년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가 후생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러한 후생연금은 연금특별계정에 100% 공시
- 연금개혁을 통해 후생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은 이전보다 이해하기 쉬워졌으나, 후생연금 통합으로 회계기준이 바뀐 것은 아님
- 다만, 일본은 발생주의를 채택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정책입안자들이 발생주의 기반 회계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어 개념체계 등을 제고할 때라 생각함

(좌장) 정책입안자 등의 발생주의 기반 회계정보 활용은 정부회계 연구에 있어 영원한 숙제라 생각

□ (백승무 공무원연금공단 차장) 사회보장적 성격과 근로보상 성격을 모두 지닌 공적연금의 분리 및 구분 공시를 통해 유용한 연금회계정보 산출

- 한국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과 근로 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유용한 연금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 요소를 구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

- 또한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적연금 재정방식에 관계없이 확정급여제도하에서 종업원급여의 성격을 갖는 연금에 대해서는 계리하도록 권고

(좌장) 연금충당부채를 반드시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스위스, 프랑스 사례를 보듯이 한국도 더 좋은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Ross Smith IPSASB 국장) IPSAS에 따라 제공되는 연금정보가 회계기준의 독립성과 일반화된 연금정보가 제공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유용

- IPSASB는 IPSAS 39(종업원급여)를 통해 위험공유 및 하이브리드 연금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였다고 판단
- 다만, 국제기준을 참고하지 않고, 현지 상황에 따라 자국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위험공유 및 혼합연금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음
- 현재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자산 수익률에 대한 연금 프로젝트가 있으며, 할인율에 관한 어려운 주제도 여전히 존재함
- 그럼에도 공공부문 연금 회계정보는 예산 및 통계보고 등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재무보고 이상의 가치를 지님

(좌장) 국제회계기준 수용을 통해 회계기준의 독립성과 일반화를 이뤄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

□ (김봉환 교수)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로 혼합된 공적연금을 분리하여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의 성격과 표시가 일치되는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한국 공적연금의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다면 성격과 표시가 일치되는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에 해당하는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추정하여 분리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



〈좌담회〉

2 「2020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가. 개요

- 일 시: 2020.12.5.(토) 14:20~16:00
- 장 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 2층, 사파이어홀
- 주 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주제 발표 및 토론〉

- [좌장] 심재영(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발표1] 국가회계기준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차이 비교(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발표2]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토론] 김봉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현미(계명대학교)
- [발표3]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공시 개선(남혜정, 동국대학교)
- [토론] 김상노(한길회계법인), 최연식(경희대학교)
- [발표4]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개선방안(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토론] 박미희(용인송담대학교),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발표1) 국가회계기준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차이 비교
(한소영 국가회계팀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기준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차이 비교」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한소영 팀장이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인 국가회계기준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하 'IPSAS') 간의 일반적 차이와 구체적 회계처리 차이를 분석하여 국가회계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처리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항목, 계정과목의 정의와 분류체계까지 규정하는 규정 중심 회계기준인 데 반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하 'IPSAS')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은 각 계정과목별로 인식기준과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표준 재무제표양식을 제시하는 데 반해 IPSAS는 인식 및 측정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적용하며, 공시 역시 최소한의 항목만 규정하고 공시사례만 예시로 제시하는 표시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로 IPSAS는 연결재무정보 산출을 규정하는 데 반해, 국가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정보 산출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회계실체가 실질 지배하는 경제실체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실체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재무정보는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IPSAS와 유사하게 연결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된다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국가의 정책목적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재정활동 정보가 모두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회계기준과 IPSAS의 구체적 회계처리 차이〉

구분		국가회계기준	IPSAS
금융자산·부채	분류	형태에 따른 분류	실질에 따른 분류
	최초 인식	취득원가(만기상환가액)	공정가치
	후속 측정	취득원가	공정가치
	용자보조효과	금리보조, 현할차, 대손효과	금리보조효과만 반영
유·무형자산	유산자산	자산 × (비용 처리)	선택에 따라 자산인식 가능
	재평가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에도 적용
	차입원가 자본화	비용 처리	자본화 가능
	무형자산	내용연수 비한정 규정 없음	내용연수 비한정 시 상각 ×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자산 차감항목	관리운영권 부채로 인식
	투자부동산	별도 규정 없음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
기타	감액과 손상	자산 유형별로 감액 규정	현금창출 여부로 구분
	재고자산 평가	선입선출법이 원칙	개별법이 원칙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만 규정	이용자, 사용자 모두 규정
	수익	교환, 비교환으로 구분	수행의무 유무로 구분
	보험	사회보험과 일반보험을 하나의 지침에서 규정	구분하여 규정
	전기오류, 정책변경	소급법과 전진법 구분	소급법 적용
	외환차손익	직전 평가시점 환율 적용	거래일(또는 평균환율) 적용

□ (발표2)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
(진태호 회계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진태호 회계사가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가회계 프로젝트 중 2020년에 진행한 재무보고 개선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선방안 및 향후 진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2020년 재무보고 개선 프로젝트는 국가 재정상태표 간소화, 국가·회계실체 재정운영표 간소화 및 결산보고서 체계 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발표에서는 국가 재정상태표 간소화가 타 국가들에 비해 공시 계정과목이 과다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을 공시하지 않고 계정과목 체계 개편을 통해 1페이지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 재정운영표 간소화 과제에서는 중앙관서 통합, 분야별 원가 정보 제공을 제시하였으며, 회계실체 재정운영표 간소화 과제에서는 프로그램으로 공시하는 단위를 상향하여 부문별 원가를 공시하는 방안,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등을 재무제표에 최소한으로 공시하고 주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결산보고서 체계 정비 과제에서는 국민연금 등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공시하여 정보유용성을 강화하는 방안, 상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교환수익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신설하는 방안, 회계실체별로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체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재무보고 개선 프로젝트는 2020년 재무제표 위주로 진행되었으므로 2021년에는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산보고서 체계 정비, 국가 결산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및 결산개요 개선, 요약 재무제표 발간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김봉환) 재무제표 등 재무보고의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개선 방향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정과목 통합, 재무제표 개선 등이 필요하며, 단순히 페이지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함. 두 번째로 기업회계기준과의 유사성을 담보하는 것이 전문가 양성, 정보이용자의 전환비용 감소 측면에서 유용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정보이용자가 현금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결산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현미)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정보이용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본 연구는 간소화,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이해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접근성 강화에 대한 연구로 대부분 동의함. 이와는 별도로 홈페이지 공시, 목적에 따른 가공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등 물리적 접근성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개선 역시 필요함. 마지막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정책정보로 유용하다는 점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정보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

□ (발표3)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공시 개선

(남혜정(동국대), 이아영(강원대), 김동수(삼일회계법인), 강홍석(삼일회계법인))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공시 개선」은 동국대학교 남혜정 교수가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국가재무제표상 투자증권 공시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및 공공부문 공시 현황을 조사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9년 국가재무제표에 인식된 총자산(2,299조원)의 39.22%를 장·단기투자증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의 중요성이 있지만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공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장·단기투자증권 보유 금액이 가장 높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714.9조원), 기획재정부(119.3조원) 그리고 국토교통부(97.4조원)의 장·단기투자증권의 공시 현황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결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의 장·단기투자증권의 공시 현황을 살펴보았다. 재무제표 주석에는 감액과 관련된 의무공시 사항을 공시하였으며 이외 다른 공시는 없었다. 그리고 감액처리된 투자증권의 전체 내역이 아니라 일부만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기타지분증권’의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그 구성내역을 파악할 수 없

었다. 출자금의 경우 출자금명세서를 공시하는데 출자금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중앙부처 모두 출자금명세서상에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누계)’ 칸이 따로 제시되어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각 중앙부처 내 어떤 개별 회계실체가 장·단기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실체인 기금 위주로 추적할 필요가 있었다. 기금재무제표의 주식과 부속명세서는 단지 기금별로 금액이 안분되어 있을 뿐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경우 기금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단기투자증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시된 정보로 더 이상 파악할 수 없었다.

한국채택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해외 국가들의 투자증권 공시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SK, 삼성전자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호주의 재무결산보고서와 회계기준을 검토하였다. 한국채택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종속회사, 관계회사 등의 재무정보와 지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시장성 있는 주요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시가 총액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와 시장에서의 평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가 상장사나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인 경우에 재무정보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주식으로 작성하고 있다. 캐나다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 재무보고서의 출연금명세서와 유사하게 캐나다 크라운기업과 기타 정부 기업에 투자한 잔액을 회사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으나, 요약재정상태표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여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지분투자 주식에서 정부 보고 대상 법인들의 요약된 재무상태에 대해 공시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정부가 직접 투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해당 출자를 실행한 기관별로 투자금액을 표기하고 있다. 연금 보장 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국가 철도 퇴직 신탁(National Railroad Retirement Investment Trust),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및 스미스소니언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의 채권, 지분증권을 공정가치 계층에 따라 총 4가지 분류로 기말 금액을 표시하고 있으며, 표 하단에 그 구분과 투자

유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연금명세서 분류 수준과 비슷하나 미국은 증권가격 측정 시 공정가치법을 사용하므로 해당 방법에 따른 세부 분류를 나누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IFRS를 적용하는 영국, 호주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가치 수준은 3단계로 구분하는데, 특히 영국 통합재정보고서에는 수준3 공정가치 정보에 대해 서술형 부연 설명이 존재하지만, 호주 국가재무보고서는 추가로 수준3 금액의 변동을 표 형식으로 자세히 보여주고 각주에서 가장 큰 변동 금액을 서술하였다. 해당 각주 정보는 별도로 '주석 9.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에서 자세히 설명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공시내용의 충분성 및 이해가능성에 대한 실무진 및 정보이용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인터뷰 대상을 정보생산자, 정보이용자, 관리 및 감독기관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2~3인의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정보생산자는 장·단기투자증권의 비중이 높은 부처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의 회계담당자를 인터뷰하였으며, 정보이용자는 학계 및 회계법인, 그리고 경제지 기자를 인터뷰하였다. 관리 및 감독기관은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당자를 섭외하였다.

정보생산자와 정보이용자 모두 현재 공시되고 있는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며, 월간 「재정동향」보다는 국가재무제표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조사되었으나, 추가 공시사항 중 감액 정보에 대해 정보이용자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정보생산자는 유용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 (김상노) 현행 국가재무제표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목적인 '회계책임성'을 달성하지 못함.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함. 기타지분증권으로 불명확하게 분류하여 중요한 금액을 표시 및 공시하는 현행 F/S는 개선이 필요하며, 국·공채·회사채 등 실무에 따른 분류는 현행 회계와 동떨어짐. '한국모태펀드'에 얼마나 투자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투자감액손실'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고, 순자산에 자산의 가치가 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최연식) 국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역시 증장기적으로 형태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보유목적에 따른 구분이 필요함. 회계책임성 강화와 공시의 완전성을 제고해야 함. 투자목적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라면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공정가치 서열을 적용하고, 서술형 설명을 제시하고, 상황별 시나리오 제공이 필요하며, 유의미한 영향력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 공시를 통해 피투자회사 예측, 정책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책목적 투자 대상이라면 지배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출연, 출자 기관의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완전 연결을 택하지 않은 경우, 연결 재무제표에서 산출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발표4)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향후 개선방안

(박윤진 재정통계팀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향후 개선방안」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박윤진 팀장이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2019년 공익법인이 최초로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공시하게 됨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분석을 통해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투명성 개선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회계감사 의무는 있으나 관련 회계기준이 부재하고, 공통된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비교가능성 제고와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므로 2017년 12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고시하고 2018년 1월부터 적용하였다. 도입 이전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나,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함으로써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공익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익법인의 실질적 운영 현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사업, 박물관·연주회·전시회 등 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 등이 공익목적사업으로 구분됨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였다.

총 의무공시법인 9,512개 기관은 학술장학이 2,453개(25.8%)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2,354개), 교육(1,621개) 순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은 192조원, 총 부채

는 47조원 수준이며 총 수익은 94조원, 총 비용은 93조원으로 수익과 비용의 규모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교육·의료 분야는 토지와 건물 비중이 높으며, 문화 분야는 금융자산과 주식 비중이 높으며, 소장 자료 등으로 인해 기타자산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학술·장학 분야는 금융자산과 주식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공익법인 사업수익 중 기부금수익(7%), 보조금수익(18%)보다 공익목적사업수익(38%)과 기타사업수익(35%) 등 공익법인의 자체 수익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수익은 주로 등록금수익이나 병원의료수익 및 투자자산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부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비중이 높고 보조금수익은 교육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비용의 67%가 공익목적사업비용이며 기타사업비가 33%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결산결과 분석 결과 기타수익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세부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수익을 세분화하여 수익 재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네 가지 성격별 분류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우나 세부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세부정보 공개,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마련,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범위 명확화 및 공시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박미희)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논란 등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익법인 간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제고, 회계투명성 강화, 기부금 내역 보고 등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공익법인 공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이를 위해 별도의 공익법인 전자공시시스템 마련 및 공익법인을 위한 표준 회계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윤성만) 본 발표는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다만, 현행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결산시스템 공시(2007년부터 개시)는 세금 징수 등 세무목적으로만 활용되는 한계가 있음. 향후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공시에서 기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적 관점의 재무보고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08

공지사항

1 뉴스레터 구독 안내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65(연구행정총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회회계의 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회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회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 집**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 **발행인**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265(센터), <http://gafsc.kipf.re.kr>

